

전문분야별 부패방지 교육교재 ③

#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 가이드

FOOD BUSINESS



부패방지위원회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 가이드

정기혜 김영래  
윤시몬 최무현



**부패방지위원회**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 문

식품위생분야의 부패는 다른 분야의 부패에 비해 일반 국민들의 접촉이 많은 분야로 부패인식 체감도가 비교적 넓게 인식될 수 있어 그 폐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겠다.

공직자 부패는 일부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일부 공직자의 문제이지 나와 내 주변의 동료들이 비난받아 마땅할 만큼 부패하지 않다고 주장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와 국민간에 인식 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도 공직자가 이러한 인식 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다. 즉, 스스로 부패를 추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부패방지를 위한 접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률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부패 예방 차원에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용에도 비중을 두고 실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주로 이론적 논의에 치우친 반부패 교육교재들을 개정하여 업무에 바쁜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였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공직부패를 분야별로 나누어 적절하고 명확한 부패극복 가이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번 교재는 그간의 부패에 관한 교육교재들과는 달리 식품위생분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하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이 교재는 철저히 식품위생분야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기 방어차원에서 부패로부터 자유스러워져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처음으로 시도된 분야별 교육교재 제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및 교재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3년 12월

집필진

# 차 례

서 문 .....	i
<b>제1부 식품위생분야 부패에 대한 이해 .....</b>	<b>1</b>
제1장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성격과 실상 .....	3
1.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정의 .....	3
2. 식품위생분야의 범위와 규모 .....	4
3. 부패 근절의 당위성 .....	6
<i>토론해 봅시다</i> .....	9
제2장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유형과 특성 .....	10
1. 식품위생분야별 부패발생 현황 .....	10
2. 식품위생분야의 부패 유형과 특성 .....	15
<i>토론해 봅시다</i> .....	18
<b>제2부 식품위생분야 부패에 대한 인식 .....</b>	<b>19</b>
제1장 우리나라 식품위생분야 부패인식도 .....	21
1. 국가차원의 부패 .....	21
2. 공직사회의 부패 .....	22
3. 식품위생분야의 부패 .....	24
<i>토론해 봅시다</i> .....	30
제2장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최근 흐름 .....	31
1. 제도 변화 .....	31
2. 부패 변화 .....	31
<i>토론해 봅시다</i> .....	33

<b>제3부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유형별 사례</b> .....	<b>35</b>
제1장 인·허가분야 .....	37
1. 영업개시 신고 후 사후 규정사항 확인과정에서의 불법 목인 .....	37
2. 영업의 부적정 허가 .....	38
제2장 지도·점검분야 .....	41
1. 불법 목인 및 단속 소홀 .....	41
2. 지도·단속 정보 누출 .....	48
3. 항응 및 금품 수수 .....	50
4. 단독 업무수행을 통한 의도적 뇌물수수 .....	54
제3장 행정처벌분야 .....	57
1. 행정처벌 경감 및 면제 .....	57
2. 행정처벌 통보지연 .....	58
3. 행정처분 미집행 .....	58
4. 행정처분 미이행 목인 .....	59
<i>토론해 봅시다</i> .....	60
<b>제4부 개인과 조직의 부패극복 가이드</b> .....	<b>61</b>
제1장 개인적 극복 가이드 .....	63
1. 식품위생분야 부패공무원의 생성 .....	63
2. 개인의 부패위험도(DCRI)진단 .....	66
3. 개인차원의 부패 대처 지침 .....	68
<i>토론해 봅시다</i> .....	75
제2장 조직적 극복 가이드 .....	76
1. 식품위생분야 조직부패의 생성 .....	76
2. 조직의 부패위험도(DCRA) 진단 .....	79

3. 조직차원의 부패 대처 지침 .....	81
<i>토론해 봅시다</i> .....	89
제3장 외부적 극복 가이드 .....	90
1.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90
2. 일반공직자의 부패신고 .....	91
3. 부패신고 처리절차 .....	92
4.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	93
5. 부패행위의 신고방법 .....	95
<i>토론해 봅시다</i> .....	96
<b>제5부 부록</b> .....	<b>97</b>
[부록 1]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청렴유지 행동강령 .....	99
[부록 2] 공무원 관련 윤리규정 .....	102
[부록 3] 부패방지법 및 시행령 .....	104
[부록 4] 조사표 .....	134
[부록 5] 조사 결과 .....	140

## 표 차례

〈표 1- 1〉 식품접객업종별 주요 불법영업행위 .....	10
〈표 1- 2〉 식품위생행정 업무기관 .....	11
〈표 1- 3〉 식품관련업 업소수 및 지방자치단체 단속 위반건수 .....	12
〈표 1- 4〉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현황 .....	14
〈표 2- 1〉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 ‘한국’의 국가청렴도지수 .....	21
〈표 2- 2〉 공직부문 부패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	22
〈표 2- 3〉 주한외국인이 본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22
〈표 2- 4〉 부패방지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23
〈표 2- 5〉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 여부 .....	25
〈표 2- 6〉 금품을 상납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 .....	25
〈표 2- 7〉 현행 영업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고 있는 영업행위 .....	26
〈표 2- 8〉 불법영업을 하고도 모면할 수 있었던 방법 .....	27
〈표 2- 9〉 현행 공무원 단속실태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행위 .....	27
〈표 2-10〉 연간 금품 상납액(전년도 기준) .....	28
〈표 2-11〉 허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여부 .....	28
〈표 2-12〉 업주 스스로의 상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	29
〈표 4- 1〉 청탁자와의 전화통화 대응법 .....	72



## ■■■■ 그림차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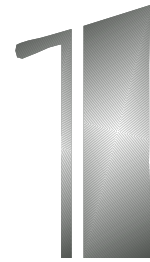
[그림 1-1]	식품위생관련업소(2002년) .....	4
[그림 1-2]	식품위생분야 관리 행정조직체계 .....	5
[그림 1-3]	사회붕괴의 과정 .....	7
[그림 1-4]	식품위생분야 업무단계별 부패 원인 .....	15
[그림 2-1]	주요아시아 국가의 국가청렴도지수(CPI) .....	22
[그림 2-2]	행정부문별 부패지수 추이 .....	23
[그림 2-3]	식품위생공무원의 부패수준 .....	24
[그림 2-4]	식품위생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비리인지시 신고여부 .....	24
[그림 4-1]	부패공무원 완성과정 .....	63
[그림 4-2]	개인부패의 순환구조 .....	64
[그림 4-3]	개인의 부패위험도 진단표 .....	66
[그림 4-4]	부패기회의 차단 .....	70
[그림 4-5]	부패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처세술 .....	73
[그림 4-6]	조직부패의 순환구조 .....	76
[그림 4-7]	기관의 부패위험도 진단표 .....	79
[그림 4-8]	부패신고사건 처리절차 .....	92
[그림 4-9]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사건 처리절차 .....	94

## 부표차례

〈부표 1- 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개요 .....	99
〈부표 2- 1〉 공직자윤리법상 윤리규정 .....	102
〈부표 2-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윤리규정 .....	102
〈부표 2- 3〉 국가공무원법상 윤리규정 .....	103
〈부표 5- 1〉 허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여부 .....	140
〈부표 5- 2〉 허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이유 .....	140
〈부표 5- 3〉 허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공무원 .....	140
〈부표 5- 4〉 영업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가장 주요한 형태 .....	141
〈부표 5- 5〉 영업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여부 .....	141
〈부표 5- 6〉 영업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공무원 .....	141
〈부표 5- 7〉 업주 스스로의 상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	142
〈부표 5- 8〉 업주 스스로 상납을 했을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 여부 .....	142
〈부표 5- 9〉 업주 스스로 상납을 했을 경우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공무원 .....	142
〈부표 5-10〉 단속시 처벌완화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공무원 .....	143
〈부표 5-11〉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 여부 .....	143
〈부표 5-12〉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이 있었던 경우 .....	143
〈부표 5-13〉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시 금품 및 향응 제공 여부 .....	143
〈부표 5-14〉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시 금품 및 향응 제공 대상 .....	144
〈부표 5-15〉 금품을 상납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 .....	144
〈부표 5-16〉 금품상납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경우 해결방안 .....	144
〈부표 5-17〉 금품 상납 여부 .....	144
〈부표 5-18〉 연간 금품 상납액 .....	145
〈부표 5-19〉 단속을 가장 불합리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공무원 .....	145
〈부표 5-20〉 업소운영관련 공무원의 월평균 지도점검 및 단속횟수 .....	145
〈부표 5-21〉 단속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 .....	146
〈부표 5-22〉 단속정보 입수경로 .....	146

〈부표 5-23〉	현행 영업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위반 여부 .....	146
〈부표 5-24〉	현행 영업규정과 관련하여 위반하고 있는 영업행위 .....	147
〈부표 5-25〉	불법영업임에도 모면할 수 있었던 방법 .....	147
〈부표 5-26〉	현행 공무원 단속실태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행위 .....	147
〈부표 5-27〉	공무원 비리의 해결방안 .....	148
〈부표 5-28〉	식품위생공무원의 부패수준 .....	148
〈부표 5-29〉	식품위생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비리 인지시 신고 여부 .....	148
〈부표 5-30〉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우선과제 .....	149

# 식품위생분야 부패에 대한 이해



식품위생분야의 부패는 개인부패 형태가 강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형 비리가 대부분으로 그 피해범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넓어 일반 국민들에게 공직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 ▶▶▶▶ 제1부의 목표

-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정의 및 범위
-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피해
- 식품위생분야 부패 척결의 필요성 이해

# 제1장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성격과 실상

식품위생분야의 부패는 개인부패 형태가 강하며 생계형 비리가 대부분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일반국민들의 접촉이 많아 부패체감도가 비교적 높게 인식되는 분야이다. 또한 식품위생분야는 부패발생의 가능성이 큰 행정업무분야 중의 하나로 국민생활과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식품위생분야의 부패척결은 우선시 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 1.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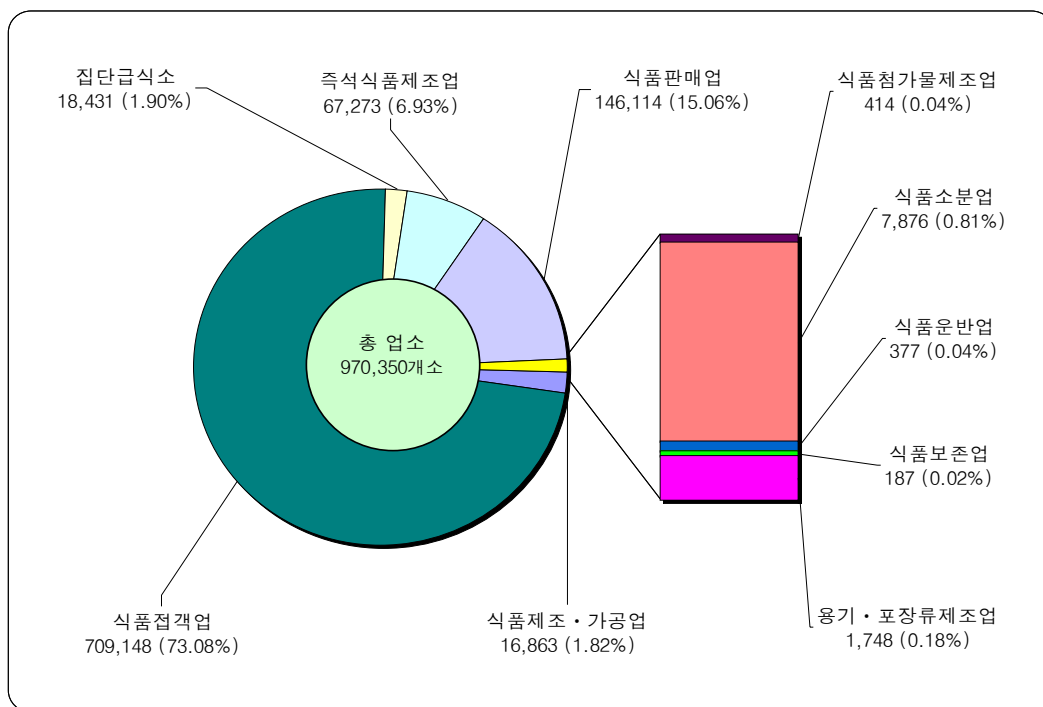
- ▶ 식품위생분야의 부패는 식품위생법을 모범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부수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행위규범을 위반하는 부패를 총칭하는 개념이다(하태권, 2001; 정기혜 외, 1999).
- ▶ 한국적 특수 상황하에서 식품위생분야의 부패 형태는 주로 업주-공무원간의 금품 혹은 향응수수의 형태로 나타난다.
- ▶ 대개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관여하는 사람의 범위가 좁고 뇌물행위자의 수도 적으며 수수행위가 외부에 공개되는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1대 1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납’, ‘평납’, ‘하납’ 등의 형태로 전 조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즉, 뇌물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는 것이다.
- ▶ 식품위생분야의 부패 발생 원인은 주로 관련 업소의 불법영업에 의해 유발된다. 식품접객업소와 관련된 불법영업은 주로 영업허가준수사항위반, 무허가 영업, 기타 불법영업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식품접객업의 불법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 식품위생분야의 범위와 규모

### □ 시장 현황

▶ 식품위생분야 부패 발생과 관련이 있는 식품위생분야의 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식품위생관련업소(2002년)



자료: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5호, 2003.

### □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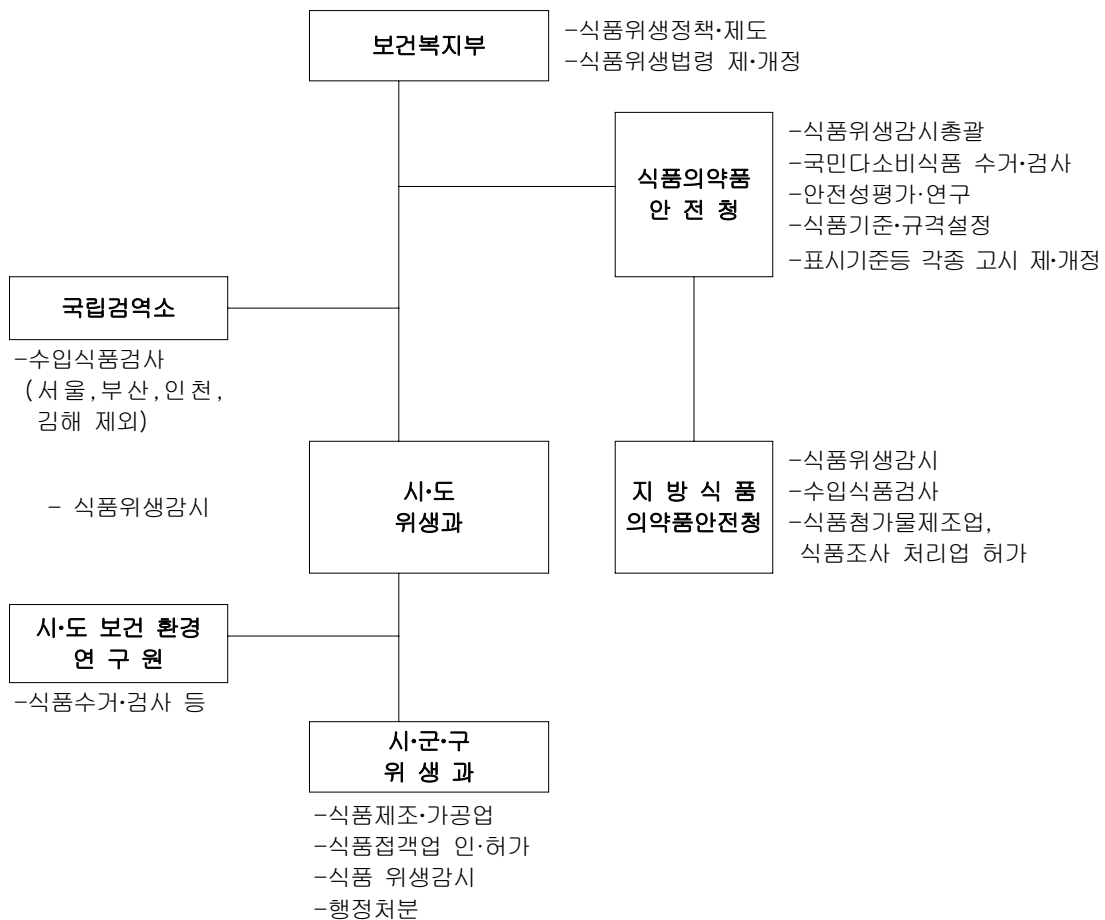
▶ 식품위생분야 부패발생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는 중앙조직과 지방 조직으로 나뉘어 있다.

- 중앙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의 약품식품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식품위생검사기관(국립보건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원) 등이 있다.

- 그리고 지방행정기관으로는 시·도 및 시·군·구청의 보건위생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이 있다.

▶ 식품위생분야의 주요 업무 내용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수입업 등으로 구분되며 가장 부정·부패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바로 식품접객업 분야이다.

[그림 1-2] 식품위생분야 관리 행정조직체계



#### □ 법령 현황

▶ 식품위생분야의 법령은 법령을 제·개정하는 보건복지부와 세부규정을 제·개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으로 크게 이원화되어있다.

- 현행 식품위생분야의 기초가 되는 기본법은 식품위생법이며 관련법으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영업허가기준, 기본식품관리요령, 식품 등의 기준 및 규

- 격,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그리고 수입식품검사지침 등이 있다.
- 이밖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풍속영업규칙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식품위생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법령들이다.

### 3. 부패 근절의 당위성

- ▶ 부패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류의 숙제이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를 반영하듯 부패(Corruption)의 어원은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라는 뜻의 합성어로 “함께 파멸하다”라는 의미이다. 즉, 부패를 현대적 의미에서 설명하자면 ‘공멸에 이르는 길’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 부패 행위는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과 같이 형법에 그 죄의 내용과 처벌 내용이 규정된 형사범죄이지만, 공무원 부패 관련 범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신분 범죄’이다.
- ▶ 공무원의 부패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의 보장자로서의 국가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식품위생분야 부패는 그 영향력이 전 국민에게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없어야 한다.

#### □ 부패발생의 폐해

##### ▶ 부패행위자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

설혹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고, 발각이 되어 구속된 경우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속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여지껏 쌓아온 모든 개인적, 사회적 업적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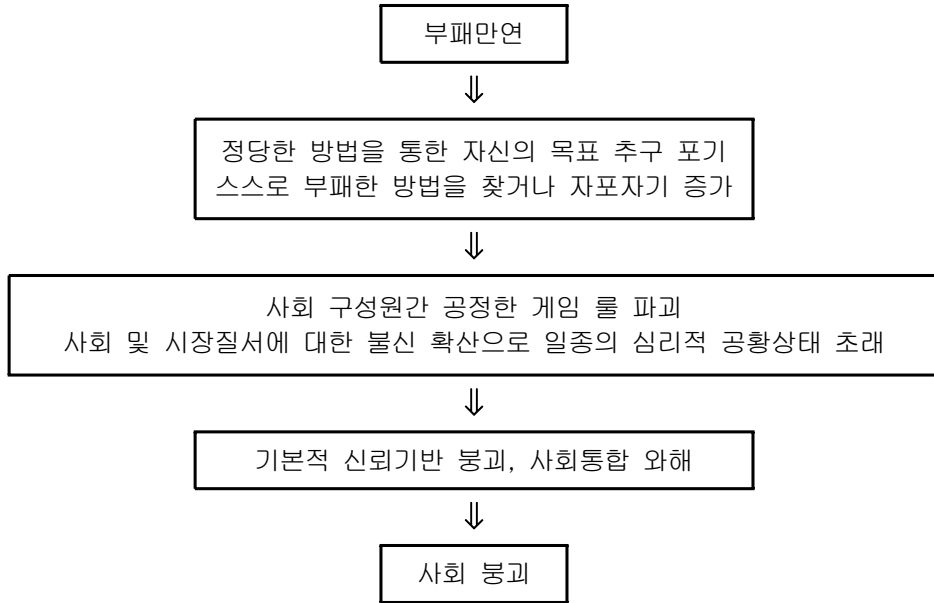
##### ▶ 사회와 국가에게 발생하는 일

사회 공동체의 신뢰감이 파괴되고, 국가 자원의 낭비와 경제성장이 저해되며, 나아가 국가 몰락이 초래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그림으로 상세히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사회붕괴의 과정



## □ 읽어보기 하나.

부패방지위원회가 2003년에 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에서 제시한 혼동하기 쉬운 부패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현금이 아니면 받아도 안전하다

- 뇌물이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족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한다.

### 2)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거나 관습상 용인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다액의 금품이나 향응은 뇌물이 된다

### 3) 직무와 관련 없으면 받아도 뇌물이 된다

- 물론 공무원도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이나 친구, 학교 동창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한다.

### 4)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내 것이다

-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5) 부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흥길동처럼 부하직원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 괜찮다

- 수뢰공무원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적 이익을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 금전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고아원, 양로원, 사회공공기관에 기부하도록 한 경우와 부하직원들 회식비 충당을 위해 금전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이다.

### 6)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려주면 뇌물 수수가 아니다

- 뇌물을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領得意思) 금전을 받은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에 해당한다.



## 제2장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유형과 특성

### 1. 식품위생분야별 부패발생 현황

#### □ 식품접객업

- ▶ 식품접객업 분야의 부패는 식품위생분야 부패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높은 곳이다. 식품접객업 분야의 부패는 영업허가와 불법영업 단속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 ▶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현재의 업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는 영업행태와 관련된 것들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로 ‘미성년자의 고용’, ‘출입허용’ 및 ‘주류판매행위’, 유흥접객부의 고용이 허가되지 않는 업종에서의 ‘유흥접객부 서비스의 제공행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의 ‘호객행위’, 유흥주점업 업소의 ‘나체쇼 등 음란퇴폐 영업행위’, 티켓다방의 ‘윤락행위’ 등이다.

〈표 1-1〉 식품접객업종별 주요 불법영업행위

업종	불법영업행위
휴게음식점	- 티켓다방 윤락행위
일반음식점	- 미성년자 주류제공 행위 - 유흥접객부 고용 영업행위
단란주점	- 미성년자 주류 제공 및 출입 행위 - 유흥접객부 고용 변태영업행위 - 호객행위
유흥주점	- 미성년 유흥접객부 고용 영업행위 - 미성년자 출입 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 호객행위 - 나체쇼 등 음란·퇴폐 영업행위 - 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미비치 - 주류 무자료거래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탈세행위
공 통	- 무허가 영업행위 - 조리장·객석·화장실 등 영업시설 무단 용도변경 행위 - 불법간판 설치 행위 - 종사자 건강진단 위반행위 - 업소내 위생관리 부실 상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3.

- 둘째는 업소시설과 관련된 문제들로서 ‘영업시설의 무단용도변경 행위’, ‘불법간판설치’ 등을 들 수 있으며,
  - 셋째는 위생과 관련된 문제로 ‘종사자 건강진단규정 위반’, 업소내의 ‘위생관리 부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무허가 영업행위’이다.
- ▶ 과거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단속 과정에서의 관련 공무원과 업주간 금품·향응 수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한 가지로 인식되고 있다.
  - ▶ 관할 공무원이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위법사항을 묵인해 주는 대가성 금품수수행위 등의 부패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부패 당사자의 이해관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식품접객업이 우리의 생활권(사회풍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여론의 관심사가 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과 사회질서의 기본 틀 유지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속권한은 시·도 보건위생과, 시·군·구의 위생과, 경찰(지방청, 경찰서, 파출소)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방서로 다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합동단속시에는 검찰도 포함된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풍속분야를, 일반공무원은 위생 및 시설분야를 단속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표 1-2〉 식품위생행정 업무기관

구 분	관련 행정기관
영업허가	○ 시·군·구
감시 및 단속	○ 허가관청 ○ 관할 시·도청 ○ 식약청 및 지방식약청 ○ 검찰청 ○ 경찰청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후 업소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처벌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표 1-3>을 보면 지자체 출범이전인 1995년에 비해 2002년에 업소수는 1.5배 정도 증가한 반면에 단속 위반건수는 2배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식품관련업 업소수 및 지방자치단체 단속 위반건수

(단위: 개소, 건)

구 분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업 소 수	691,135	796,428	836,154	848,722	916,713	959,749
단속건수	103,089	83,526	80,269	69,728	80,368	57,57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각 연도 재구성.

- ▶ 특히 단란주점업은 1980년도 중반 이후 속칭 가라오케의 선봉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주류풍속이 나타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새로이 생긴 영업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류의 판매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객실의 설치가 허용되는 노래연습장과는 구별되며, 또한 여성접객부를 둘 수 없는 점은 유흥주점과 구별된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불건전한 음주문화 행태로 인해 대부분의 단란주점 업주들은 접대부 불법고용 영업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관할 공무원에게 정기 혹은 수시 상납 형태의 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특히 시·군·구 관할공무원에 비해 단란주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와의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찰의 잦은 업소 출입은 업주와의 금품수수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 유흥주점의 경우 고율의 과세를 피하기 위한 탈세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업주와 세무공무원 간의 부조리 발생 소지가 크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 상납비리, 수고비 명목의 금품제공, 인사이동시 상납비리 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 우리의 식품접객업 관련 부패가 과거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업주-공무원간 금품수수관계, 업주의 위법변태영업 등 부정한 관행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고착된 환경으로 체질화되어 있다.

- ▶ 특히 대형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평소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은 검사나 경찰, 시청·구청 관계공무원들과 친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세무관리와의 밀착관계는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따라서 이들에 대한 뇌물행위는 매우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이득을 추구하려는 업주들에게 이것은 일명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 □ 식품 제조·가공업

- ▶ 우리나라 식품 제조·가공산업의 총 생산액은 1996년도 기준으로 25조 6천억원으로 외식산업 등 관련산업의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로 환산하여 볼 때 국내 총생산(GDP) 275조 7천억원의 2.9%,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82조 8천억원의 9.6%에 해당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부패발생 특징은 식품접객업의 경우처럼 단속 공무원과 업소의 결탁에 의한 연속적이고 직접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내용이 막연하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시설,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으로 인한 발생 잠재성과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있다.
- ▶ 즉, 일부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평소 결탁이 가능한 공무원과 소위 ‘보험’성격의 유대를 갖고 있어 필요할 때 부조리로 악용할 수 있으며, 영세업자는 적발되었을 때 소위 ‘단발식 무마용’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 ▶ 식품 제조·가공업은 지방화시대의 출범과 함께 허가·신고·감시의 관장업무가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관리할 역량이 충분치 않고, 세원 조달이라는 목적하에 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또한 관련 검사시설·장비·인력의 보강이 충분하지 못하며, 일부 부적합한 검사기준·규격 및 허가신고와 수거·검사기관의 활동이 업주-공무원간 부패의 고리로 작용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 ▶ 식품제조·가공업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관련기관으로는 영업허가 권한이 있는 시·도 및 시·군·구와 단속권한이 있는 시·도의 보건위생과, 그리고 시·군·구의 위생과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들 수 있다.

□ 수입식품 등의 검사관련 분야

- ▶ 1995년 WTO 출범이래 수입식품의 양이 증가하면선 검사건수, 검사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부패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이다.
- ▶ 식품을 수입하는 근거법령은 현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이며, 수입식품검사종류는 3종류로 각각의 처리기간은 서류검사가 2일, 관능검사가 3일, 그리고 정밀검사는 10일로 규정되어있다.

〈표 1-4〉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현황

(단위: 건, 톤, 천불)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10. 31
건수	68,550	108,280	133,761	147,742	166,723	149,326
중량	8,224,419	9,779,882	10,351,538	10,514,267	10,487,799	9,279,837
금액	3,152,292	3,573,545	4,036,496	4,282.715	4,621,414	4,885,84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3.

- ▶ 그러나 수입식품 등의 검사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식품위생분야에 비해 부패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업자의 ‘표시사항 위반행위’와 함께 검사기간 단축이나 정밀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 특히 현재 식품수입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업에 종사할 수 있어 한탕주의식 수입업자가 대다수임을 감안할 때 향후는 수입식품관리와 함께 수입업자 관리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식품위생분야의 부패 유형과 특성

### □ 식품위생분야 부패 유형

- ▶ 식품위생분야의 부패는 현 식품위생분야 제도에 근거하여 업소의 영업시작인 인·허가단계, 영업 중 실시되는 지도·점검단계,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에 의한 행정처벌단계의 3단계별로 나누어 발생하고 있다.
- ▶ 즉,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단란, 유흥주점업은 허가) 등 모든 식품위생업소는 모두 신고로 영업을 시작하고, 영업중에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및 제품 기준규격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받게되며, 그 결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예방과 무마를 위한 유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 ▶ 그러나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리는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단계의 비리 발생에 직·간접인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그림 1-4] 식품위생분야 업무단계별 부패 원인

주요단계	세부업무내용	부패원인
인허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 허가 및 신고 승인</li> <li>• 허가를 위한 사전 현장점검</li> <li>• 신고시 사후 현장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기준 불명확 및 자의적 운용</li> </ul>
↓		
지도점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집행</li> <li>• 수시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집행</li> <li>• 지도점검 결과 정리 및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 현실적인 일부 법 조항</li> <li>• 만연된 불법영업</li> <li>• 법의 자의적 운용 가능</li> <li>• 담당자의 비 전문화</li> <li>• 일부 공무원의 의식</li> <li>• 관행적인 업주의 뇌물상납</li> </ul>
↓		
행정처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처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 통보</li> <li>- 처벌 집행</li> <li>- 이행 확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장의 온정주의</li> <li>• 행정처벌의 지자체로 일원화</li> </ul>

## □ 식품 분야 부패 특성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식품수입업 등 모든 식품업종을 대상으로한 식품위생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특성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부패의 구조화·일상화

조사에 따르면 식품위생분야 관련 민원인이나 업주의 상당수가 신고·허가나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기관도 검찰, 경찰, 시·구청, 기타 유관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일선기관 포함) 및 검사기관 등 5~7개에 이르고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부패의 지방정부 이전화

1995년 지자체 출범이후 식품위생분야 부패는 식품첨가물업과 식품조사업(지방식약청 담당)을 제외한 모든 식품위생분야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민행정과정에서 발생하며, 개별적으로는 그 규모나 영향력이 사소하지만, 그것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은 매우 크다.

### ▶ 직거래형 단순 부패 네트워크

식품위생분야 민원업무와 관련된 부패는 일부 대기업의 과징금 축소 등 행정처벌업무와 기준규격 적용상의 유리한 해석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고·허가 및 지도·점검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며 따라서 업주와 담당공무원이 1:1로 직접 연결되는 직거래형 단순 네트워크로 형성된다.

### ▶ 식품접객업과 지도·점검업무 분야에서 주로 발생

식품위생분야에서의 민원행정부패는 업무 종류별로는 식품접객업 분야에서, 업무 성격별로는 인·허가업무와 지도·점검업무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지도·점검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 지도·단속업무의 경우는 보험료적 성격,  
신고·허가업무의 경우는 현장 무마용 성격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유는 지도·점검업무의 경우에는 주로 보험료적인 성격이, 신고·허가업무의 경우에는 불법목인을 위한 현장 무마용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 ▶ 지도·점검업무의 경우는 정기적,  
신고·허가업무의 경우는 업무처리 중이나 후에 금품 제공

지도·점검업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또는 단속 중이거나 단속 종료 후에 금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하여, 신고·허가업무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업무처리 중이나 처리 후에 금품을 제공하고 있고, 신고·허가과정에서 불법이 지적된 업소는 향후 지도·점검업무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생계형 부정·부패

식품 위생분야의 민원행정부패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 공직자들에 의한 이른바 ‘생계형 부조리’(petty corruption)이라는 점에서 정치가나 고위 공직자들에 의한 ‘권력형 부조리’나 ‘축재형 부조리’와 구별된다.

- ▶ 금품제공의 은밀성

업무와 관련된 금품은 주로 업소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제3의 장소도 비교적 자주 이용되고 있다. 특히 지도·점검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로 현장 점검시에 해당 업소에서 은밀히 금품이 제공되고 있어, 민원행정 관련 부패의 은밀성을 보여준다.

## 토론해 봅시다

부패를 유발하는 식품위생분야의 특성이 무엇이며, 다른 분야에 비해 식품위생분야가 특히 부패에 취약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토론해 봅시다.

식품위생분야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상식적인 이유는 무엇인지를 토론해 봅시다.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 나눠 봅시다.

근래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토론해 봅시다.

# 식품위생분야 부패에 대한 인식

# 2

공직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패인식도와 식품위생분야의 부패인식도를 살펴보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 교재를 읽는 공직자들에게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기본지식을 알려주고자 한다.

## ▶▶▶▶ 제2부의 목표

-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이해
- 식품위생분야 부패인식도 파악
-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최근 흐름 분석

# 제1장 우리나라 식품위생분야 부패인식도

우리나라 공직사회 전반과 식품위생분야 부패에 관한 국내외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수준 등에 걸맞지 않게 부패발생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 1. 국가차원의 부패

### □ 국가청렴도지수

- ▶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03년 발표한 국가청렴도지수가 <표 2-1>에 제시되어있다.
- ▶ 현재 한국이 경제규모는 10위권이나 국가청렴도지수는 133개국 중 50위로서 부패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OECD 30개 국가 중에서 그리스와 함께 24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표 2-1>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 '한국'의 국가청렴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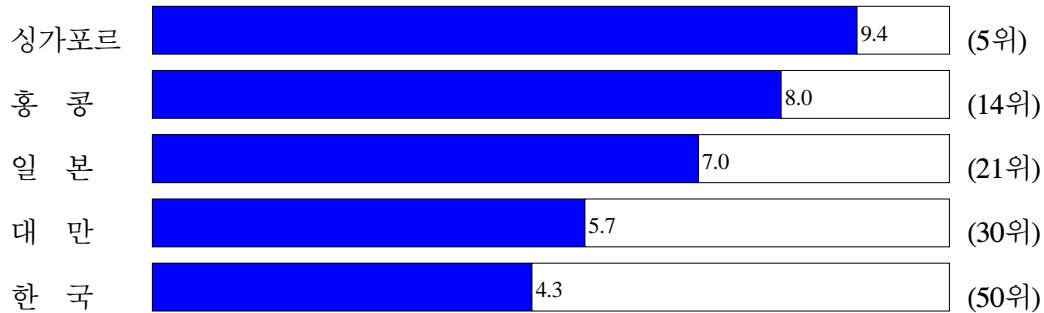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부패지수 <sup>1)</sup>	4.29점	4.2점	3.8점	4.0점	4.2점	4.5점	4.3점
국별순위	34위	43위	50위	48위	42위	40위	50위
조사대상국수	52개	85개	99개	90개	91개	102개	133개

주: 1) 국가청렴도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2003. 6.

- ▶ 이처럼 우리나라 부패 수준에 관한 외국 전문기관들의 평가는 우리나라의 부패가 실로 참담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된 아프리카 나라들과 비슷하거나 못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 ▶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에서도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1 참조). 이러한 상황은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2-1] 주요아시아 국가의 국가청렴도지수(CPI)



자료: 2003년 TI자료, 133개국 대상임(10점 만점).

## 2. 공직사회의 부패

### □ 공직사회 부패 수준

- ▶ 부패방지위원회가 2003년도 부패관련 국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 ▶ 우리나라 국민의 58.2%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90% 이상이 한국 사회는 부패사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주한 외국인은 63.3%가 한국 공직자는 부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2-2> 공직부문 부패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매우부패	부패한편	보통	부패안한편	거의 부패안함	잘모름
16.1	42.1	30.2	4.9	0.9	5.8

자료: 부패방지위원회, 2003. 6.

<표 2-3> 주한외국인이 본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매우부패	다소부패	보통	부패하지 않음
11.9	51.4	25.7	11.0

자료: 부패방지위원회, 2003. 6.

- ▶ 이제 공직사회가 우리나라 부패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인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깨끗한 나라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상황이다.

## □ 행정분야별 부패 수준

-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2002년도에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였다.
- ▶ 내국인의 인식도 조사는 분기 단위로 1차(3.30~4.3), 2차(7.11~7.15), 3차(10.11~10.15), 4차(12.20~12.24)에 걸쳐서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 ▶ 조사대상과 표본규모는 각 조사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일반국민 1,500명, 공무원 5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2-4〉 부패방지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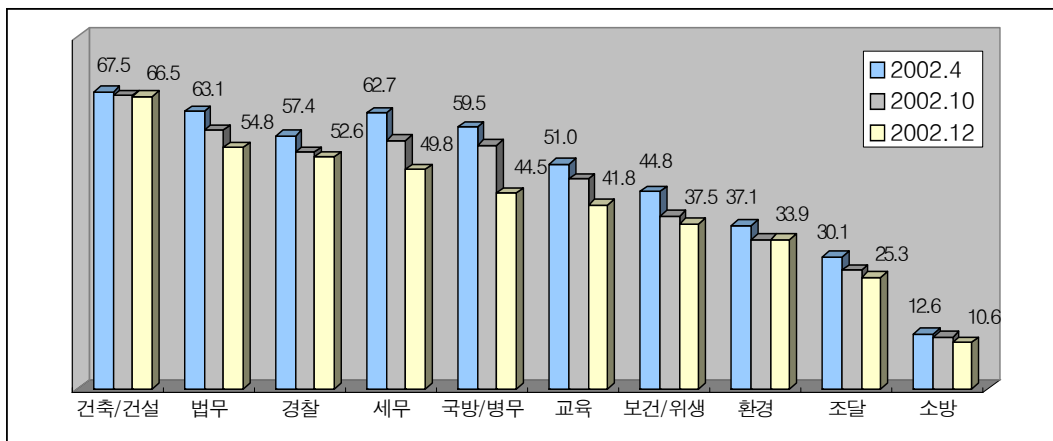
구 분	건축/건설	법 무	세 무	국방/병무	경 찰	교 육	보건/위생	환 경	조 달	소 방
일반인	66.5	54.8	49.8	44.5	52.6	41.8	37.5	33.9	25.3	10.6
공무원	34.6	40.6	28.8	23.2	39.6	26.4	19.2	10.8	9.2	7.4
전문가	78.0	61.0	72.0	71.0	72.0	63.0	52.0	33.0	45.0	30.0

주: 일반국민·공무원은 2002년 12월 조사 기준이고, 전문가는 10월 기준임.

자료: 부패방지위원회, 2003.

- ▶ 행정기능분야별로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경우 건설·건축 부문이 부패가 가장 심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보건/위생 부문도 부패가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2-2] 행정부문별 부패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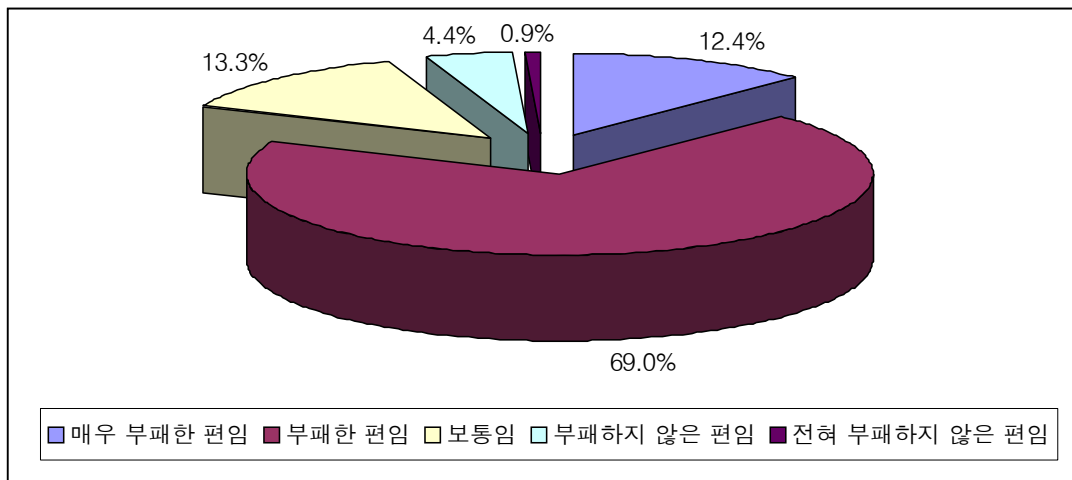
자료: 부패방지위원회(2003.2)



### 3. 식품위생분야의 부패

- ▶ 2003년도 11월 현재 전국에서 주점업을 운영하는 업주 11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재식 조사방법에 의해 실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식품위생분야 부패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에 비하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식품위생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부패한 편임(12.4%), 부패한 편임(69.0%)으로 부패했다고 대답한 비율이 81.4%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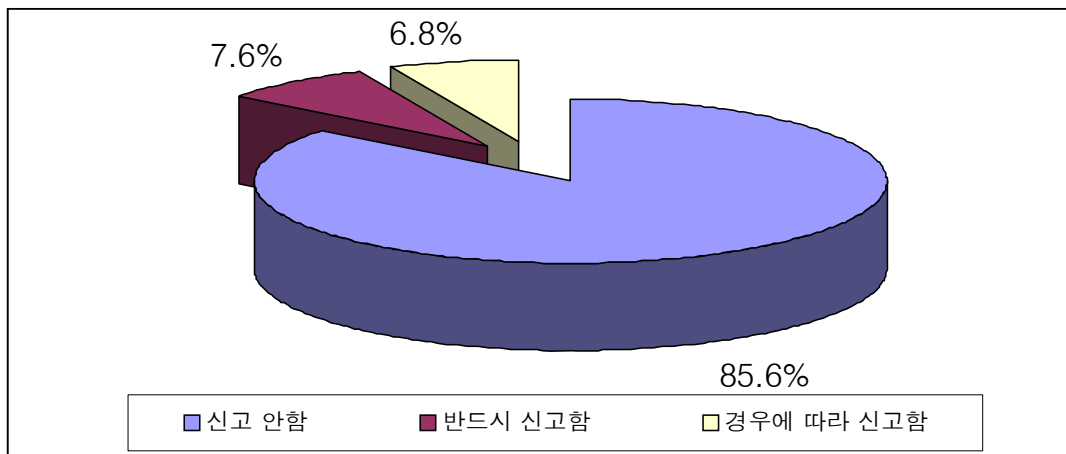
[그림 2-3] 식품위생공무원의 부패수준



주: 무응답 6명을 제외함(부패한 편임: 81.4%, 부패하지 않은 편임: 5.3%).

- ▶ 식품위생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비리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비율이 85.6%에 달해 식품위생분야 부패가 밖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식품위생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비리인지시 신고여부



- ▶ 공무원의 강압에 의해 상납한 경우가 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은 업무의 인수인계시(43.1%), 명절 때(27.1%)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 여부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70	100.0	189	100.0
있음	56	80.0	156	82.5
- 명절 때 (떡값 명목)	26	46.4	26	27.1
- 휴가철(휴가비 명목)	15	26.8	8	6.5
- 업무인수 인계시	10	17.9	53	43.1
- 경조사비	2	3.6	1	0.8
- 기 타	3	5.4	8	6.5
없음	14	20.0	33	17.5

주: 중복응답이고, 무응답자 제외임.

- ▶ 금품을 상납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69.8%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업주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공무원의 인허가, 지도·점검, 행정처벌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이익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 상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패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금품을 상납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69	100.0	116	100.0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음	43	62.3	81	69.8
- 다시 받지 않기 위해 상납을 하였음.	28	66.7	69	90.8
- 가만히 있었음.	12	28.6	5	6.6
- 다른 행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음	2	4.8	2	2.6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음	26	37.7	35	30.2

주: 1) 무응답 3명을 제외한 수임.

2) 불이익을 당한 대상자 중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함.

- ▶ 현행 영업규정에 대해 영업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96.0%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이는 현행 법규정이 비현실적이어서 업주들이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영업행위는 여성종사자 불법영업(41.3%), 보건증 보유여부(17.9%), 허가증 미부착(17.9%), 내부시설관련(15.6%) 등으로 나타났다.

〈표 2-7〉 현행 영업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고 있는 영업행위

(단위: 명)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124	100.0	218	100.0
여성종사자 불법영업	56	<b>44.8</b>	90	<b>41.3</b>
영업시간 위반 <sup>1)</sup>	32	25.6	-	-
내부시설관련	18	<b>14.4</b>	34	<b>15.6</b>
보건증 보유여부(건강진단여부)	9	7.2	39	<b>17.9</b>
허가증 미부착	4	3.2	39	<b>17.9</b>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3	2.4	3	1.4
미성년자 고용	1	0.8	2	0.9
건축법, 학교보건법 위반	1	0.8	4	1.8
허가구역 위반	-	-	4	1.8
기타	-	-	3	1.4

주: 1) 중복응답임.

2) 영업시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999년 3월 1일 이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에 대해서도 모두 영업시간 규제가 철폐되었으므로 2003년 이후 불법의 소지는 해소되었으며, 2003년은 보건증 위반대신 건강진단 여부를 질문함.

3)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 불법영업을 하고도 모면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는 미래 준비해 둔 금품 제공(45.2%),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로(41.7%) 등으로 대답하여 식품위생분야의 부패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2-8〉 불법영업을 하고도 모면할 수 있었던 방법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48	100.0	168	100.0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로	19	39.6	70	41.7
정기적 상납이나 수시 상납에 따른 대가	16	33.3	4	2.4
미리 준비해 둔 금품 제공	6	12.5	76	45.2
슬쩍대 및 향응제공	2	4.2	8	4.8
기 타	5	10.4	10	6.0

주: 중복응답임.

기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무마를 시도함'.

- ▶ 현행 공무원 단속 실태 중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중복단속에서 오는 간접적 영업방해(76.4%)를 지적하고 있다.

〈표 2-9〉 현행 공무원 단속실태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행위

(단위: 명, %)

내 용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66	100.0	106	100.0
법규의 모순 내지 미비로부터 오는 문제	25	37.9	7	6.6
중복단속에서 오는 간접적 영업방해	19	28.8	81	76.4
단속공무원의 비전문성에서 오는 문제	17	25.8	8	7.5
영업방해식 단속	5	7.6	8	7.5
기타	-	-	2	2.0

주: 무응답 13명 제외함.

- ▶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액수가 1999년에는 69.7%가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반면 2003년에는 전체의 36.0%가 1,0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상납액수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0〉 연간 금품 상납액(전년도 기준)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33	100.0	50	100.0
200만원 미만	23	69.7	20	4.0
200~400만원 미만	6	18.2	8	16.0
400~600만원 미만	2	6.1	1	2.0
600~800만원 미만	-	-	-	-
800~1,000만원 미만	1	3.0	3	6.0
1,000만원 이상	1	3.0	18	36.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2003. 11.

- ▶ 영업허가가 신고제로 일부 전환되면서 허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49.6%로 감소하였고, 제공사유도 급행료 대신에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로 바뀌었으나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인허가단계 부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표 2-11〉 허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여부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73	100.0	119	100.0
제한적 있음	52	71.2	59	49.6
-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26	50.0	51	86.4
- 조속한 허가를 얻기 위해	11	21.2	5	8.5
- 허가과정의 관례상	10	19.2	1	1.7
- 기타	5	9.6	2	3.4
그런 적이 없음	21	28.8	60	50.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2003. 11.

- ▶ 단란주점 업주들은 최근 수사·상시 점검을 피하기 위해 상납하기보다는(38.2%) 공무원의 자의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뇌물을 상납하고(50.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업주 스스로의 상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내 용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55	100.0	96	100.0
수시·상시 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21	38.2	18	18.8
공무원의 자의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17	30.9	48	50.0
수시·상시 점검의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8	14.5	6	6.3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6	10.9	16	16.7
기타	3	5.5	8	8.3

주: 무응답 23명을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2003. 11.



## 제2장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최근 흐름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최근 식품위생분야 부패 발생 행태는 과거와는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다. 즉, 지난 수년간 식품위생분야의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 및 법령개선 등으로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식품위생분야 부패 발생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 1. 제도 변화

#### □ 지방자치단체 출범

1995년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지도점검 등 모든 식품위생업 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 □ 식품위생분야 규제완화

1990년대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규제정책이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시절 5년간 각 분야별 규제완화 정책에 집중되면서 식품위생분야도 최초 등록규제 196건 중 97건이 규제 폐지, 완화, 이관 등 규제 개선되었다.

#### □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2001년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에 의해 부패에 관한 식품위생분야 공무원들의 경각심 고취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근절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고 있다.

#### □ 관련 법령 제·개정

식품위생업소의 허가 규제 완화에 따른 신고제로의 전환, 단란주점업의 영업허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이 시의성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 2. 부패 변화

#### □ 개인부패 증가

과거 북마전이던 식품위생분야 부패가 사정 강화, 업주와 상위직급의 의식 개선, 공무



원 연금 지급 등 제도 변화에 의해 조직적 부패는 줄어들고 있으나 현장에서 직접 지도 점검을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개인적 부패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뇌물 상납액 증가

부패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발생한 부패는 위험수당 등이 포함되어 건수당 뇌물액수는 커지고 있다.

#### □ 뇌물 형태 다양

전통적인 뇌물의 형태는 금전이었으나 요즘은 승용차, 고급 선물류, 상품권 제공 등 자칫 비리가 덜 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물건 제공 등 뇌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 □ 인허가 단계 부패 감소

주점업인 단주주점과 유흥주점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위생분야 영업허가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영업허가와 관련된 부패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 □ 행정처벌 단계 부패 감소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민선 지자체장의 온정주의 등에 의해 행정처벌이 약해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부패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 □ 강압에 의한 뇌물 공여 증가

합법영업을 하는 업주들의 의도적 뇌물 공여가 줄고 있으나 일부 담당자들의 강압에 의한 비의도적 뇌물 공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고질적인 부패 존속

제도개선, 사회전반의 의식 개선, 인터넷 사용 증가와 전산망 구축 등으로 식품위생분야 부패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감소하였으나 소수 공무원들의 그릇된 의식과 불법영업을 일삼는 일부 업주들의 유착에 의해 식품위생분야의 고질적인 부패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 토론해 봅시다

□ 식품위생분야의 고질적인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 나눠 봅시다.

□ 근래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 이유를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더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이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유형별 사례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유형별 사례는 부패 발생 3단계별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즉, 업소의 인·허가 단계, 영업 중 실시되는 지도·점검 단계, 그리고 행정처벌이 행해지는 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리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다른 단계의 비리 발생에 직·간접인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 ▶▶▶▶ 제3부의 목표

- 식품위생분야 부패발생의 단계 파악
-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유형 분류
- 각 단계별 부패사례 발굴

## 제1장 인·허가분야

- ▶ 식품접객업종 중 주점업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위생분야의 영업허가는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규제완화차원에서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되었다. 이런 제도 개정에 의해 영업개시를 위한 급행료 성격의 뇌물제공 및 수수는 상당수 사라진 실정이다.
- ▶ 신고대상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고 후 영업중에 실시하는 사후 규정점검시 불법이 발견되면 개선하기보다는 불법자체를 무마하려는 업주와 관련 공무원간의 유착으로 비리가 발생되며 이러한 유착은 지도점검단계에서도 불법 영업 및 시설확장과 연결되어 지속적인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 ▶ 불법을 눈감아 주기 보다는 영업초기부터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본인은 물론 후임자도 부패에 연루될 수 있는 빌미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 인허가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패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영업개시 신고후 사후 규정사항 확인과정에서의 불법 목인
  2. 영업의 부적정 허가
    - ① 관련 공문서 위조
    - ② 관련법 미검토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영업개시 신고 후 사후 규정사항 확인과정에서의 불법 목인

이런 유형의 부패는 주로 영업시작 후 사후 현장 점검시 영업시설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의 개선을 원하지 않는 업주의 요구와 담당자의 관련 규정예 관한 자의적 해석에 의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비리는 지도·점검단계까지 연속될 수 있는 부패발생의 원인이 되며, 또한 후임자에게도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식품위생분야 비리의 단초가 되고 있다.

사례 1	신고에 따른 사후 확인시 위법사항 무마
<p>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지하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은 실제 사용하는 영업장 면적이 86.79㎡로 소방시설완비증명서제출대상 기준면적인 66㎡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면적을 61.44㎡로 축소 보고하여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1997. 6. 18 영업허가 하는 등 총 2건을 부당하게 허가 처리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감사연보, 2000)</p>	

## 2. 영업의 부적정 허가

현행 관련 법상 단란주점업은 현행법상 밀실을 설치하면 안되고, 상업지역에서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성업중인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소내 밀실을 철거하든가 아니면 유흥주점업으로 업종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보다는 납세의무가 가벼운 단란주점으로 시설 변경없이 업종 전환을 하고자 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마치 시설개선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여 업종변경을 허가해주고 대가로 사전, 사후에 뇌물 수수를 하는 비리를 저질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례 2	업종변경 허가를 위한 공문서 위조
<p>○○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25일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란주점 허가를 내준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7급)와 ○○○(8급)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행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p> <p>즉, 공무원 ○○○씨 등은 2002년 4월 ○○시 ○○구 S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영업허가를 단란주점업 허가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협회 간부인 ○○○씨 등을 통해 받고 시설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허가관련 서류를 조작해 단란주점업 허가를 내주고 150만원을 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수백 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반부패국민연대 2003. 2. 27. 기사)</p>	

또 다른 사례는 학교정화구역 등 현행 법상 제한구역으로 정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법시설을 한 업소를 단란주점업으로 부적정한 허가를 한 사례이다.

이런 유형의 비리는 당장 눈앞의 금품을 탐하는 단세포적이며 근시안적 부패행태로 그 자리만 피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우리나라 행정풍토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3	단란주점 불법허가 관련 직무유기
<p>○○지검 특수부 ○○○ 검사는 19일 ○○시 ○구청의 유흥주점 불법허가와 관련 전 ○구청 위생과장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씨는 위생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7월과 11월 유흥주점 영업제한지역인 ○구 ○○동과 ○○동에 유흥주점 시설을 갖춘 술집임을 알면서도 시설 허가를 갖춘 것으로 둔갑시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준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해 2월 ○○서부경찰서는 이 건과 관련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청 ○○○(유흥 허가담당)씨를 전격 구속하고 ○(단란주점 허가담당)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씨와 ○씨는 지난 2001년 2월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허가를 내준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구청은 『불문경고』 후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어 똑같은 비리를 재차 저지른 것이며, 이번 문과장의 구속은 지난해 2월 비리건과 관련 ○구청 말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과장 또한 비리에 연류됨이 밝혀진 것으로 검찰관계자는 『수사결과 구속된 실무담당자가 “허가처리 할 수 없는 사안임을 거듭 보고했음에도 문 과장이 허가하도록 부당 지시한 것” 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그러므로 19일 같은 건으로 해당과장이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1년 여 만에 말단 공무원만의 비리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구청은 왜 공문서 위조로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을 형식적인 불문경고 후 똑같은 업무를 맡겼던 것일까. 담당 국장과 과장은 2001년 2월 경찰에 의해 익히 불법으로 적발된 업소를 폐업시키지 않고 같은 해 7월 오히려 유흥주점 허가를 내주도록 지시한 것일까. 관할 경찰서는 불법업소임을 확인하고도 왜 일년이 넘게 영업을 계속하도록 한 것일까. ○○시는 누가 바도 불법업소임을 확인하고도 왜 업무상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린 걸까?』 등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오마이뉴스 2003. 5. 19. 기사)</p>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흥주점업소 영업을 승인하는 부적정 허가를 하여 행정상 주의 처분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유형의 비리는 다른 동일한 사건을 비추어 볼 때 업주와 담당 공무원간의 유착이 의심되나, 한편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에 의해서도 비롯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례 4	유흥주점 허가에 의한 부적정 행정에 관한 주의 조치
	<p>2003년 감사를 통한 적발사항 중에서 유흥주점 허가와 관련한 행정적 위법 사항이 있었다. 즉,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정화구역 안에서는 단란·유흥주점의 영업행위는 금지하되,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시 ○○과에서는 학교보건법 저촉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유흥주점인 ○○미인관을 허가함으로써 유흥주점 허가 부적정에 대한 『행정상 주의』 처분조치를 받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행정자치부, 감사사례집, 2003)</p>

## 제2장 지도·점검분야

- ▶ 지도점검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패가 주점업을 제외한 식품업체의 영업개설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가장 주된 단계가 되고 있다.
- ▶ 즉, 지도점검단계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부패와 이미 인허가 단계에서 태생된 불법과 관련된 연속적인 비리가 상존하며 사례도 여러 유형이다. 특히 식품접객업 전반의 불법영업이 만연하면서 지도점검단계에서의 유착과 비리 발생은 불법영업 정도에 따라 커지고 있다.
- ▶ 지도·점검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불법 목인 및 단속 소홀
  2. 지도·단속 정보 누출
  3. 항응 및 금품 수수
  4. 단독 업무수행을 통한 의도적 뇌물수수

각 유형별 부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불법 목인 및 단속 소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불법영업을 목인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비리 유형이다.

사례 1	티켓다방 불법영업행위 무마 대가의 뇌물요구·수령
<p>○○구청의 보건위생과 직원인 ○○○씨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후 여성도우미를 고용하여 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티켓다방』을 파악하고 상기 업소를 방문하여 적발조치를 무마시키는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수령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민국○○○○총연합회 면담자료, 2003, 11)</p>	



즉, 현행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명시된 주점업은 청소년 위해업소로 청소년의 출입, 고용이 불허되고 있으나 사전 유착에 의해 이들 청소년 위해업소가 법을 지키고 있는 지에 관한 단속을 소홀히 하고, 단속정보도 사전에 유출시키는 등 가장 비인간적이며 고질적인 식품위생분야 비리 유형이다.

사례 2	청소년 위해업소의 단속 소홀
<p>지난 19일 오후 9시 서울 모 구청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다섯명이 승합차로 관내 유흥가를 향해 떠났다. 구청과 지역 청소년보호단체 직원 두명씩, 그리고 경찰관 한명이다. 이날 밤 들른 곳은 호프집·소주방 20군데와 단란주점 다섯곳. 많게는 50~60명, 적게는 10여명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꽤 어려 보이는 청소년 몇몇이 눈에 띄었지만 단속반은 대충 둘러보곤 “미성년자 없지요?” 라고 묻는 것으로 대부분 단속을 마쳤다. T호프집에서 만 19세에 한달 모자라는 소녀 한명을 적발, 업소주인에게 자인서를 받은 게 실적의 전부였다. 단속반이 구청에 돌아온 시간은 오후 11시. 업소당 머무른 시간은 평균 1~2분 정도였다. 1999년 10월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 이후 서울시가 시작한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 단속. “철저한 단속과 엄벌”을 외쳤던 초기의 분위기는 1년반이 넘어가면서 형식적 곁핼기로 변질돼가고 있다. 당연히 단속 실적은 곤두박질친다. 근무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에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심, 단속 정보의 사전 유출 등도 가세해 단속을 약화시킨다. 본사 취재팀이 구청 세곳의 단속을 동행 취재한 결과 연 10억원 이상을 들이는 구청·경찰·시민단체 합동단속은 “예산만 낭비한다” 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했다. 대부분 규정된 여덟 시간의 단속시간(오후 7시~다음날 오전 3시)중 절반도 채우지 않았고, 인원도 규정(6~7명 한팀)에 미달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중앙일보 검색 2001년 04월 27일 (금) )</p>	

사례 2(계속)	청소년 위해업소의 단속 소홀
<p>◇ 겉도는 단속= 유흥가가 밀집한 서울 강북지역 한 구청의 지난달 단속 실적은 네 건. 구청 관계자는 "다음날 정상출근 하려면 일찍 마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본격 영업이 시작되는 오후 11시쯤 단속을 끝내버리는 셈" 이라고 말했다.</p> <p>합동단속을 해야 할 경찰들이 바쁜 업무를 이유로 불참하는 일도 잦아 차질을 빚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자체 훈련 등을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온다"며 "최근 '업무 때문에 한 달간 단속에 참여하지 못한다' 는 공문까지 보내왔다" 고 말했다. 도봉구청 단속반 관계자는 "경찰관이 없으면 손님들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올 초 업주들이 '내가 뭔데 단속이냐'며 단속반을 폭행해 두 명이 입원한 일도 있다" 고 했다.</p> <p>이에 대해 관악구의 한 파출소 관계자는 "우리 일에도 손이 달려 구청 단속까지 나갈 여유가 없다" 고 말했다.</p> <p>◇ 소극적인 민선 구청장들=강남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하기만 하면 업주들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한다" 면서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 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라 최근엔 이런 경향이 더 심하다" 고 덧붙였다.</p> <p>◇ 단속 정보 유출도=서대문구의 한 시민단체는 "한밤에 어떤 비디오방이 중·고생을 입장시켜 영업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단속반에 이 사실을 알린 뒤 함께 나가보니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며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했다.</p> <p>도봉구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구청직원이나 경찰들이 '이 업소는 제외하자' 고 제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 단속반에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p> <p>(중앙일보 검색 2001년 04월 27일 (금) )</p>	

두 번째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로 식품위생분야에 만연한 비리 유형이다.

사례 3	불법영업행위에 의한 처벌 모면
<p>일반음식점의 업태에서 벗어나 여종업원을 여성접객부화하여 여성접객서비스 및 주류를 제공하는 등 주점업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일반음식점업소에 대하여 2003년 ○○구청 ○○과 식품담당공무원인 ○○씨는 상기업소 점검 시 불법영업을 지적하고 행정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업중앙회 면담자료, 2003, 11)</p>	

세 번째는 불법 시설 설치, 불법 서비스 제공 등 광범위한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상납을 받는 비리 유형이다.

사례 4	불법영업행위에 의한 처벌 모면의 대가로 뇌물수수
<p>2003년 ○○구청의 식품위생과 직원은 일반음식점 중 1인 독주가 허가된 『Live Cafe』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뇌물요구 비리를 저질렀다. 즉, 『Live Cafe』가 음악과 주류이외의 노래방 기기 설치 및 여성고용접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의 묵인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수령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업중앙회 면담자료, 2003, 11)</p>	

담당 공무원이 평상시 공생관계에 있는 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위 상위 부처 담당자에게 복마전 식의 비리를 저지른 사례로 비교적 발생건수는 상대적으로 희박하나 이런 비리는 불법영업이 사회에 존재할 수 있게 하며, 공직사회내의 부패 확산 효과가 있고, 그리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척결이 필요한 비리 유형이다.

사례 5	돈받은 검찰직원 전격 구속
<p>검찰이 단속 대상인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검찰직원을 전격 구속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달 초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 영업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 는 부탁과 함께 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직원 ○○(37)씨를 14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남부지청 관할 내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유흥업소 주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검 고양지청 직원 ○(38·구속)씨를 통해 ○○씨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는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이중 900만원을 ○○씨에게 건네면서 업주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 줄 것을 부탁했다. ○○씨는 수뢰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자 범죄를 인정하고, 뇌물로 받은 돈을 유흥업소 주인에게 되돌려줬으나 구속됐다.</p> <p>(문화일보, 2003년 10월 14일 (화) 13:06)</p>	

사례 6

구미 퇴폐술집 뇌물리스트 “철퇴”

퇴폐술집 뇌물리스트에 오른 구미지역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등 검찰의 철퇴가 내려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시 봉곡동 B가요주점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 ○(50) 씨를 구속하고 경찰 세무 시청공무원의 혐의를 밝혀내 사법 처리했다. 검찰은 이 주점 공동대표로 있던 ○(43), ○(40)씨, 관리자 ○씨 등 3명은 뇌물공여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또 구미시청 위생관리계 ○씨(39)는 지난해 9월 주점 측으로부터 상품권 130만원과 올해 2월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미경찰서 전직형사인 ○씨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받았고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14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은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구미세무서 직원도 2차례에 걸쳐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 서울 삼성세무서 직원 ○씨도 5차례에 걸쳐 8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청 기능직인 ○씨도 13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관련자 뇌물액수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고 있다. (수사착수) 사건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11일 이 가요주점은 손님 ○씨(26)가 술값문제로 다툰 뒤 112신고를 통해 이곳의 퇴폐영업사실을 신고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시간당 화대 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중요 부분을 노출하는 등 퇴폐영업을 한 혐의로 업소 주인 이모 씨와 여종업원 4명을 입건했다. 이 사건은 20일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23일 업소장부 압수와 함께 종업원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 씨에 대한 수사망을 압축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단속실적) 문제의 가요주점은 구미지역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던 곳이어서 그 동안 끊임없이 퇴폐영업시비가 일었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극히 미진했다. B가요주점과 그 전신인 H가요주점은 실질적인 업주가 같은 사람이다. H가요주점은 지난 2000년 11월에 개업했기 때문에 B가요주점은 사실상 17개월 정도를 영업했지만 구미시는 종사자 명부 미기재 1차례와 건강진단 미필 2차례 등 모두 3차례만 적발했을 뿐이다. 경찰도 지난해 11월 손님이 퇴폐영업으로 신고한 것 이외에는 사소한 건수로 4차례 단속하는데 그쳤다. 퇴폐가요주점의 유명세에 비해 형편없는 단속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B가요주점은 어떤 곳?) 이 가요주점은 지난해 9월 봉곡동에 개업한 유흥주점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0년 11월 문을 연 H가요주점이 명칭과 상호만을 바꿔 실질적인 업주는 ○씨다. 이곳은 개업당시부터 퇴폐영업으로 유명세를 탔다. 일명 ‘계곡주’는 여종업원들의 중요부분에 술을 부어 손님들이 마시는 것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대구와 인근지역은 물론 심지어 대전에서까지 손님이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화끈한 노래방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30여 명의 여종업원이 하루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기업형 가요주점으로 급성장한 곳이다. 업계관계자는 “주변의 유흥주점은 이곳의 떡고물만 받아먹어도 하루 200~300만원의 매출은 거뜰하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한 관계자는 “경찰이 비밀단속에 나선다지만 단속정보는 항상 새나간다”면서 “단속을 대비해 업소반경 1km지점부터 종업원들을 배치하고 300m 지점에는 CCTV를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2002년 04월 07일 (일) 04:10)

영업 후 시설 확장, 축소 등 변경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식품 위생법 제13조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을 어긴 업소를 봐주는 불법 목인 사례는 상호 공생 적인 가장 보편화된 식품위생분야 비리 유형이다.

사례 7	부당한 시설확장에 따른 행정처분 무마
<p>최근에 ○○주점 업주들은 처음 인·허가 당시의 업장 면적조건(40평)에서 벗어나 영업 중에 불법으로 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다. ○○○○○중앙회가 집계한 ○○주점의 경우 현재 업소의 불법 면적 확장률은 총 면적의 60%로 이의 시정명령을 모면하기 위하여 업주 스스로가 담당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담당공무원은 뇌물수수의 대가로 타 공무원에게 불법 변경 적발시 바로 명의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모면하라는 편법을 제공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중앙회 면담자료, 2003)</p>	

건전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무허가 업소 처리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무허가업소로 영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유형의 비리는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주로 현장 점검을 주도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서 발생하는 부패 유형이다.

사례 8	무허가 영업 목인 및 고의적 보고 누락
<p>서울지검 형사4부는 1997. 10. 23 무허가 영업을 목인하고 단속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대문 경찰서 방범지도계 ○(40)·무악파출소 ○(34)경장 등 경찰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준 ○구 ○동 무허가 락카페 ‘콜라’ 업주 ○(42)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장은 ○씨가 지난해 3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유흥주점인 락카페로 무허가영업을 해온 사실을 목인해 주고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25만~1백만원씩 9월까지 모두 960만원을, ○경장은 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신촌일대 10여개 무허가 유흥주점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일보, 1997. 10. 24).</p>	

형식적인 위생단속에 의한 특정업체 봐주기식의 비리 사례로 특히 식품안전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형식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식중독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무책임한 저질적인 비리 유형이다.

사례 9	일반음식점의 형식적인 위생단속
<p>전남 무안군내의 ○○음식점이 개장이후 6년 동안 위생검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안군 컨트리클럽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라는 일반음식점은 지난달 20일 허가를 받았지만 두 달 전부터 이용객들에게 음식을 파는 등 식당 영업을 하고 있어도 해당 부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군 의회에 따르면 “주말에는 이용객들이 7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여름에는 보건위생이 최우선이지만 관계기관이 전혀 위생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p> <p>보건소는 지난 ‘사스’, ‘콜레라’ 등이 활기를 띠는 시기에도 전국 수백여명의 주말 이용객이 ○○음식점을 찾았지만 ○○집 위생단속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평일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단속했다. 무안군 컨트리클럽은 일반음식점을 7개소 운영하고 있지만 1997년 개장이후 최근까지 식당 종사자 건강진단서 미발급으로 과태료(40만원) 1건만 적발되었을 뿐 주말에는 보건증이 없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도 적발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되는 곳이라 평일 단속은 하고 있지만 휴일에는 공무원들이 휴무라 단속을 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목포에 사는 ○(48)씨는 “해장국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식사를 다하지 못했다” 며 “○○이라는 음식점은 위생이 비교적 깨끗하지 못하다” 고 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일보, 2003년 11월 11일 (화) 18:12)</p>	

## 2. 지도·단속 정보 누출

지도·단속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패사례로 지도·단속정보를 사전에 업소에 유출시켜 대비토록 하고 대가로 업주와 담당 공무원간에 뇌물, 향응이 오고가고 있는 전형적인 식품위생분야 부패 유형이다.

사례 1	업소의 사전 지도·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서 뇌물요구·수수
<p>○○○○○중앙회에 따르면 ○○주점이 현재 여성접객원 제공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할 지자체 ○○부서 담당자에게 뇌물 상납을 통하여 지도·단속 일시를 알아내어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p> <p>즉, 이러한 사전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뇌물액은 실제 적발시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나 형벌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주 스스로가 뇌물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소재지 담당공무원도 상기업소의 불법사항을 파악하여 의도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중앙회 면담자료, 2003)</p>	

사례 2	부방위 기초단체장 등 비리고발
<p>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최근 비리혐의로 신고된 기초단체장, 구의회 의장, 국립대교수, 검찰 및 경찰 공무원 등 8건을 검찰 및 경찰에 고발하고 8건은 감사원 및 해당기관에 감사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씨는 단속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유흥업소 및 성인오락실 업자로부터 3천4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다.</p> <p style="text-align: right;">(YTN, 2002년 06월 26일 (수) 13:30)</p>	

사례 3	돈받고 윤락영업 묵인 및 단속정보 제공
<p>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8일 뇌물을 받고 윤락영업을 묵인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남부경찰서 ○경사(42)와 전직경관 ○씨(48), 남동구청 직원 ○씨(34) 등 관련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남부서 ○경장(3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씨(48) 등 업주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7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각각 관할 파출소와 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일부 업소의 윤락 알선행위 등을 묵인하고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80만~1,19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p> <p style="text-align: right;">(국민일보, 2000년 06월 18일 (일) )</p>	



### 3. 향응 및 금품 수수

일부 공무원들이 업소에서 향응이나 물품을 제공받고 있는 유형의 비리로 특정일에 돈 대신 선물 제공을 유도하며, 특정업소에서는 업소 고유의 향응을 제공토록 유도하는 변형된 종류의 비리 유형으로 최근 다발하고 있다.

사례 1	업주에게 금전대신 선물을 요청하는 변형된 비리
<p>2003년 추석을 앞두고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는 명절 떡값으로 ○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관습 유지와 관련 규정의 유리한 행정 적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담당공무원을 만나 상기 ○○협회 간부들이 금전으로 공무원에게 뇌물 상납을 제공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금전은 사양하고 보건위생과 전 직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정 액 이상의 선물 제공을 암시함으로써 기존의 관습적 뇌물수수에서 선물로 변형된 비리가 전체 공공조직과 직원간의 연계 고리로 형성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업중앙회 면담자료, 2003, 11)</p>	

사례 2	향응 요구
<p>서울특별시 ○○구는 지난 4년 동안 관내 단란주점에서 공짜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 ○계장(6급) 등 위생과 직원 8명을 1일 직위해제했다. 구청은 지난달 21일 D단란주점을 운영했던 ○씨(35)로부터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94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47차례에 걸쳐 1천3백만 원 상당의 공짜술을 마셨으니 술값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아일보, 1998. 10. 4)</p>	

사례 3	구청 관내 업주의 자발적인 향응 제공 및 대불
<p>○○특별시 모 구청장이 관내 어느 식당에서 회식을 주관할 때 해당업주가 돈을 받지 않거나 일부만 받는다. 또는 청장과 같이 온 업주가 대불 하는 경우의 비리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법원 판결 1985. 5. 14. 83도 2050)</p>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의해 식품위생분야 부패가 많이 줄었지만, 현재도 공무원의 10~20%는 식품위생과에 근무하면 당연히 업소로부터 정기적인 향응과 뇌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비리를 저지르는 고전적 유형으로 특히 업무 인계인수과정에서 후임자에게 뇌물상납 정보를 전달하여 뇌물 연계고리를 유지시켜 식품위생분야의 지속적인 부패발생을 유발하는 가장 악질적인 비리 유형이다.

사례 4	관할 업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업주로부터 뇌물수수
<p>1997년 12월 서울 C동에 단란주점을 개업한 ○모(36·여)씨는 술집문을 열기도 전에 찾아온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준 1백만원 등 경찰·구청·소방서 공무원들에게 줄줄이 개업신고를 치러야 했다. ○씨는 “공무원들에게 일상적으로 바치는 돈이 요즘도 매달 2백여 만 원”이라고 말했다.</p> <p>○씨의 단란주점은 접대부·밀실·부실·소방시설 등 불법투성으로 만약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예 영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업주가 ‘법을 어겨도 돈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정도로 공무원들의 부패는 일상화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중앙일보, 1998. 10. 22).</p>	

사례 5	관할 업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업주로부터 뇌물수수
<p>서울 강남의 한 립살롱에서 4년째 영업상무를 하고 있는 ○(40)씨는 “경찰과 구청직원 등 모두 7곳의 공무원들이 요즘도 매달 정해진 날에 20만~1백만 원씩 ‘수금’하러 온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중앙일보, 1998. 7. 7)</p>	

<b>사례 6</b>	<b>계획적으로 식품위생부서에 근무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수수</b>
<p>과거에는 식품위생과를 통한 뇌물 및 금품 수수의 기회와 액수가 상당하여 지자체 공무원 보직 중에서 식품위생업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많았지만 위생업무의 과다, 제도 전환(업소의 인·허가에서 신고제 전환), 지자체 이후의 민원행정전산화시스템 개발에 의한 행정업무 투명화와 인터넷 공개 질의사이트 운영 등의 환경여건 변화로 식품위생분야 비리 발생의 개연성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공무원 중 10%~20%는 작정하고 식품 부서에 전근하여 관할 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 즉, 정기적으로 업주가 스스로 상납하는 금품은 물론이고 불법시설 변경 및 불법영업 등을 빙자하여 명절 등 특정 일이나 월 1회씩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근절되지 않는 비리가 현존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중앙회 면담자료, 2003)</p>	

<b>사례 7</b>	<b>관내 유흥업소로부터 뇌물수수</b>
<p>경찰청 감찰과는 ○○경찰청 박○○ 경무관은 2001. 7. 25. 점심시간 회식자리에서 대낮 폭탄주를 마신 일이 경찰 감찰부서에 포착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수뢰협약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기 경무관은 1998년 서울 강남경찰서장 재직당시 부하직원이 관내 유흥업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바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반부패국민연대 2001. 8. 6. 기사)</p>	

<b>사례 8</b>	<b>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상납 비밀장부 전달로 비리 공유</b>
<p>○○시 ○○구 보건위생과에서 전근하는 선임자 ○○○씨는 담당 구역에 소재 한 뇌물 수수 가능한 업체명, 뇌물 상납액 및 경찰출입여부 등이 수록된 비밀장부를 후임자 ○○○씨에게 비밀리에 인수·인계하여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간의 비리를 공유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중앙회 면담자료, 2003)</p>	

불법을 하거나 위법을 하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특정일에 보험성의 향응이나 금품을 상납하는 고전적인 비리 유형으로 이는 비리의지가 없던 공무원들을 유혹하는 원초적 계기가 되는 비리의 시작점이다.

<b>사례 9</b>	<b>구청 관내 업주들의 자발적 뇌물 상납</b>
<p>○○시 모 구청 보건위생과 직원으로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의 경험담으로 위생상태 점검 차 관할 구내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곳 저곳에서 넣어 주는 봉투 수가 최소 10개는 되었다. 처음에는 여러 번 거절했지만 오히려 상대방에서 불편해 했다. 위생상태가 문제가 없는 업소인데도 거의 예외 없이 다만 몇 만원이라도 수고한다고 집어주곤 했다. 평소에 관계직원과 관계를 잘 맺어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일부 과 경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청장 이하 간부들의 판공비에 충당되었다. 상기 직원은 법적 처벌이 두려워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대법원에서 부패사례로 제시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법원 판결 1985. 5. 14. 83도2050)</p>	

<b>사례 10</b>	<b>향후 회사운영상의 편리를 위한 보험성 뇌물 수수</b>
<p>2003년 대구의 모 식품첨가물업체는 관련 행정기관의 ○부장이 학교 후배라는 연고로 업체 운영에 관한 자문의 형식을 빌어 몇 차례 회의를 한 후 그 대가로 승용차를 제공하였음. 승용차를 제공받은 담당 식품직 고위 공무원은 해당 업체를 위해 현재 행정편리를 봐준 것은 없지만 보험 성격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대구 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공직에서 물러났음.</p> <p style="text-align: right;">(대구 지방법원, 2003)</p>	

<b>사례 11</b>	<b>민간 단체가 자발적으로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b>
<p>○○협회는 지회가 소속된 관련 지자체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에게 기관 대 기관 간의 유대 형성을 도모하는 협회 조직차원의 자발적 금품 상납을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여름휴가를 금품 상납의 특정 시기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협회 주도형의 비리이며 이러한 유형의 비리는 상기 협회 회원업체의 사용 식재료에 대한 지도·단속시 행정처벌 면제, 완화를 추구하는 목적의 뇌물공여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협회 면담자료, 2003)</p>	

#### 4. 단독 업무수행을 통한 의도적 뇌물수수

현장 지도·점검시 2인 1조의 규칙을 어기고 혼자 현장점검을 나가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혹 추후 발각 시 법적 선처를 목적으로 금품수수액수를 5만원으로 정해 놓고 수령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새로운 비리 유형이다.

사례 1	의도적으로 공무원 1인이 업체 지도·단속하여 뇌물 착취
<p>현 2인 1조의 지도점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주사보는 인력 부족을 핑계로 혼자 지도·단속을 나와서 불법영업을 거론하여 업주가 금품을 제공토록 유도하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하면서 의도적으로 업체로부터 뇌물 착취를 하고 있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중앙회 면담자료, 2003)</p>	

사례 2	일정액만을 수수하는 공무원
<p>○○○구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은 업주로부터 정기상납이나 수시 상납의 액수를 본인 스스로가 1회 5만원으로 정하여 받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향후 뇌물 수수 적발 시 소액수수에 의한 법적 처벌 강도를 경감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중앙회 면담자료, 2003)</p>	

사례 3	지자체 출범이후 하위직 본인만 뇌물 수령
<p>과거에는 ○과의 직원 전체가 업주로부터 상납된 뇌물을 공유하였으나 지자체 출범이후 지자체장의 선심행정과 사정행정 강화에 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몸사리기에 의해 복마전 양상이 퇴화되면서 식품위생공무원의 비리 는 1인형 뇌물(금품) 수수체제로 변형되고 있는 추세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중앙회 면담자료, 2003)</p>	

이 사업(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단속에 걸린다면 그건 영업을 정말 순진하게 했거나 뭔가 뭇보인 게 있다는 뜻이죠.” 서울에서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백모 씨(36)는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두려워해 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단속정보 90% 미리 입수▼

백씨가 설명하는 ‘단속이 두렵지 않은 이유’ 는 바로 ‘유착’ 때문. 그는 “경찰서, 구청, 업주 모두 긴밀하게 연결돼있으며 이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는 한 단속을 당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고 장담했다. 백씨가 밝힌 상납금액은 한 달에 120만원. 구청 위생과 직원 및 경찰서와 관할 파출소에 각각 30만원씩 돌아가고 나머지 30만원은 ‘비상금’ 이다. 불시에 찾아오는 단속반원들에게 건네 줄 돈이라는 것.

최근에는 단속직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구청이 적지 않다. 시민들이 단속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반원들이 업주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이 때문에 유착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각 구청의 주장.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백씨는 코웃음을 쳤다. “딱 보면 시민—구청 합동 단속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업주가 눈치 없이 그런 자리에서 돈을 줍니까? 그리고 꼭 단속하러 나온 날 돈을 쥐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돈 받으러 오는 날은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보통 매달 말일 경에 오는데 가끔 동료 직원들과 같이 와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물론 돈은 안내죠.” 백씨는 “이 바닥에서 일하면 서로 다 친해진다. 그런 친분이 없으면 절대 장사 못한다” 고 말한다.

상납의 대가로 백씨가 얻는 것은 단속에 대한 정보. 백씨는 “적어도 내가 일하는 지역에서는 단속하는 날짜와 시간 등이 90% 이상 미리 입수된다” 고 말한다. 백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단속은 업주들에게 매달 몇 번씩 있는 형식적인 통과외 레일 뿐인 셈이다. 백씨는 자신이 영업하는 지역은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신문에 지역이 공개되면 해당 구청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

(동아일보 검색 2000년 08월 07일 (월) 19:22)

▼'친분' 없으면 장사 못해▼

서울 강북지역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전모씨(40)는 “단속직원과 업주는 사실상 한 가족” 이라고 표현한다. “룸살롱은 무허가 영업과 미짜(미성년자의 숙어) 고용 두 가지가 주로 단속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담당 공무원들은 훤히 꿰뚫어 보고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들이 묵인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죠.”

전씨는 “서울 중구 북창동처럼 업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단속이 뜨는 날 한번 가보시라. 그 근처 다방과 오락실에 미짜들이 득실득실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미리 단속 정보를 입수한 업주들이 단속 일에는 미성년자를 업소 밖으로 피신시키기 때문에 갈 곳 없어진 이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다방과 오락실에 몰려든다는 설명이다.

자신은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전씨. 하지만 그 이유는 단속 때문이 아니다.

“단속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진짜 겁나는 건 경쟁 업소가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신고를 112로 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기록에 남아 경찰도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친분이 있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전씨는 또 관공서가 발표하는 단속 숫자에도 허수(虛數)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어느 정도 건수를 맞춰야 하는 단속 공무원들이 친분이 있는 업주들과 합의해 가벼운 처벌만 내린다는 설명이다.

▼“제도바뀌 유착없다” 반박▼

업주들의 이 같은 실토에 대해 단속 담당자들은 유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시 위생과의 한 관계자는 “원래 업주들은 의도적으로 공무원과 유착됐다고 떠들고 다닌다. 소문을 냄으로써 공무원들에게 흠집을 내 단속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라며 “1년 단위로 위생과 직원을 교체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이뤄져 유착은 사실상 사라졌다” 고 반박했다.

(동아일보 검색 2000년 08월 07일 (월) 19:22)

## 제3장 행정처벌분야

행정처벌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부패 유형은 행정처벌 경감 및 면제와 행정처벌 통보 지연, 행정처벌 미집행과 행정처벌 미이행 목인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부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행정처벌 경감 및 면제

행정처벌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양형을 낮게 책정하여 업체에 이익을 주는 사례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식품위생분야 부패 발생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형태로 특히 지자체 출범이후 증가하고 있는 비리 유형이다.

사례 1	행정처벌 경감
<p>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판매행위로 적발 통보된 유흥주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 출입(1월)과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위(15일)를 병과하여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연간 매출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과소 산정하여 하루 6만원 씩 180만원만 처분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라남도 감사사례집, 1999)</p>	

사례 2	행정처벌 경감 및 면제
<p>서울특별시 ○○구에서는 ○○동 403-16 소재 ○○○단란주점의 미성년자접객부 고용 및 술시중 행위를 처분함에 있어, 위의 위반사항이 영업정지 3월에 해당되나 유흥형태 위반만 적용하여 영업정지 2월로 가볍게 처분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접객부 고용위반 사항을 적출하고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감사사례집, 2000)</p>	



## 2. 행정처벌 통보지연

현재 식품위생분야 지도단속은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및 6개 지방청 등에서 실시하나 점검결과에 관한 행정처분 조치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다.

타 행정부서에서 통보된 행정처벌 이행 통지를 업소에 늦게 통보하여 불법영업을 조장, 방조하는 유형의 비리이다.

사례 1	행정처벌 통보를 지연 처리
<p>2003년 감사 실시를 통한 적발사항 중에서 위반업소 통보 지연처리 관련 행정적 위법부당 내용으로 ○○도에서는 식약청이나 타 시·도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관할 처분권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단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1999년의 경우 총 55건 중 25건, 2000년의 경우 총 59건 중 19건, 2001년의 경우 총 70건 중 22건을 7일 이상 지연 통보함으로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불량식품 등의 수거·폐기 등을 지연하여 업무 처리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지연 처리에 대한 『행정상 주의』 처분조치를 받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행정자치부, 감사사례집, 2003)</p>	

## 3. 행정처분 미집행

행정처분을 내리면 반드시 집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집행하는 처사로 인력 부족에 의한 업무과다를 핑계로 실제 특정업소 봐주기 식의 비리 유형이다.

사례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집행
<p>2003년 감사 실시를 통한 적발사항 중에서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관련 행정적 위법부당 내용으로 사법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피의자』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업소는 물론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청문을 실시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도 ○○군 환경위생과에서는 경찰서로부터 통보된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면서 동업소 종업원이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노래방 여러 곳에서 식품위생법 및 음반·비디오게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단순히 ○○휴게음식점만을 행정처분함으로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집행에 대한 『행정상 시정』 처분조치를 받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행정자치부, 감사사례집, 2003)</p>	

#### 4. 행정처분 미이행 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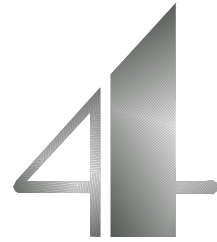
업소가 행정처분을 미이행하는 것을 목인하는 조치로 지자체 출범이후 만연된 식품위생분야 부패 유형이다.

사례 1	행정처분 미이행 목인
	<p>1998. 7. 6. 서울특별시 ○○구 위생과 감시계장을 반장으로 한 심야·불법 영업 단속반원들은, 관내 M카페가 밀폐된 룸을 만들고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자, 이를 단속하러 나왔다가 봉투를 챙겼다. 이들이 떠난 뒤 카페 여주인 ○(43)씨는 취재팀에 “준비된 게 별로 없어 1백만원 밖에 못 줬다”며 “수표로 주면 안 받아 현찰로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 위생과 감시계장은 취재팀과의 전화 통화에서 “만나서 술이나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자”며 뇌물수수 확인을 거부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중앙일보, 1998. 7. 7)</p>

## 토론해 봅시다

- 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유형에 대해 토의해보고 다른 사례를 논의해 봅시다.
  
- 식품위생분야 부패 유형별 대처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 식품위생분야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에 관한  
논의해 봅시다.

# 개인과 조직의 부패극복 가이드



부패는 각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다. 각 개인은 스스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자신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조직구조나 조직문화 또한 부패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직의 부패위험도 진단도 필요하며, 조직구성원들은 불법적인 사익추구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익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제4부의 목표

- 식품위생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의사결정 지침 확립
- 개인 및 조직의 부패위험도 진단을 통한 자가진단
- 부패 신고에 관한 이해 및 절차

# 제1장 개인적 극복 가이드

이 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일로 대민 접촉이 잦은 식품위생분야 공직자들의 개인차원의 부패 발생 순환 구조와 부패 발생 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식품위생분야 부패공무원의 생성

- ▶ 처음부터 공직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을 목적으로 시험과 면접 등 어려운 선발과정을 거치고 공무원이 될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의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규범을 자신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동일화 과정을 거치므로 식품위생분야 부패공무원은 통상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림 4-1] 부패공무원 완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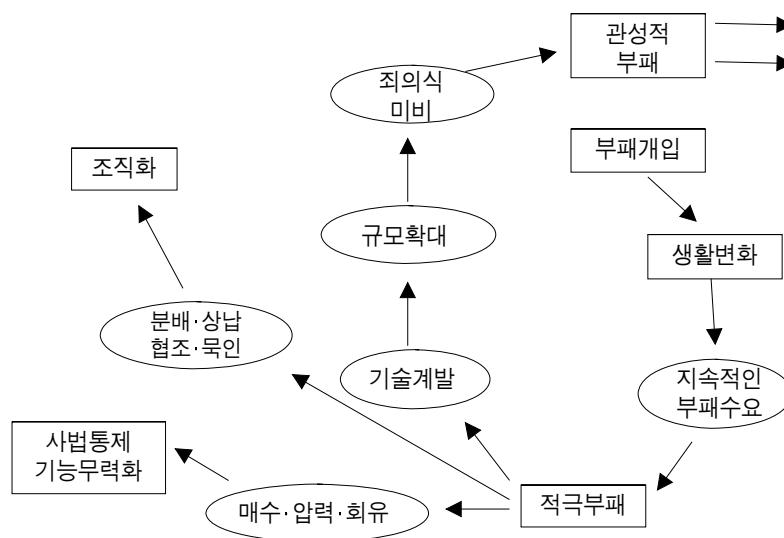
<b>제1단계</b>	<b>잘못된 조직과의 만남</b> 보통의 공무원이 부패가 일상화된 조직에 배치 받는다
<b>제2단계</b>	<b>조직적응단계</b> 상사와 선배들의 행태를 보고 듣고 그들과의 매일 반복되는 접촉을 통해 조직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과정을 갖는다. (만일 조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못하는 식품위생분야 공무원은 내적, 외적 갈등을 겪다가 조직을 떠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동화된 사람들만 남게 된다)
<b>제3단계</b>	<b>식품위생분야 부패학습단계</b> 알선, 청탁전화, 10만원 정도의 봉투 받기, 각종 향응 접대의 수수 등 남들이 하는 정도의 사소한 부패행위를 배우고 시작하게 된다.
<b>제4단계</b>	<b>식품위생분야 부패의 생활화 단계</b> 짚은 향응과 봉투 수수를 통해 특정 민원인과 교분을 쌓아간다. 동시에 자신의 월급 수준 이상의 생활에 익숙해져 끊기가 어려워진다.
<b>제5단계</b>	<b>범죄 실행 단계(식품위생분야 부패공무원 완성 단계)</b> 오랫 동안 교분을 쌓아온 민원인이 결정적인 이권을 청탁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다. 이미 거절할 명분도 약한 상태이고 발각 위험에도 감각이 무디어진 상태라 조심스럽게 뇌물을 받는다.

▶ 이처럼 식품위생분야 부패공무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하에 이루어지며, 식품위생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때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평상시 자신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하여 마음가짐을 항상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 [그림 4-2]에는 개인부패의 구조적 특징이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다.

▶ 소규모의 개인적 부정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실질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부패관계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는 것은 어려워지며 오히려 향상된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는 반복되고, 부패의 규모는 확대되게 된다.

[그림 4-2] 개인부패의 순환구조



자료: 김용세, 『공직부패의 개념, 유형과 구조』, 1998.

□ 읽어보기 하나.

사례 1	명절엔 갈비세트
<p>정○○씨(41, 8급)는 모 지방자치단체의 위생분야에 근무하면서 관내 업주들이 정기적으로 주는 상납금을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했다. 주로 명절 전에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과를 통하여 정씨에게 건네졌는데 넉넉지 않은 살림의 정씨에게는 바로 단비와 같았다. 정씨는 이 돈을 가지고 시집과 친정에 줄 선물은 물론 가족의 명절 준비도 아쉽지 않게 할 수 있었다.</p> <p>하지만 동사무소로 발령난 후 맞이하는 첫 추석에 정씨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자신의 월급에서 예전처럼 명절 준비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월급에 맞추어 갈비세트와 양주를 과일 박스와 정종으로 대치하자니 너무 초라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일종의 금단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 이후부터 정씨는 명절이 짜증스럽고 귀찮아졌으며 빨리 다시 예전의 보직으로 돌아가길 원하게 되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부패방지위원회(2003), 「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p>	

## 2. 개인의 부패위험도(DCRI)진단

### □ 당신의 부패 위험도(DCRI: Degree of Corruption Risk for Individuals)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보시고 “예”라고 답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를 합산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점수 해석법을 보시고 부패에 빠질 위험이 당신에게는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 [그림 4-3] 개인의 부패위험도 진단표

- 석 달 치 이상의 봉급을 초과하는 부채나 책임을 지고 있다 □
- 현 직장과는 별도로 개인적인 사업이나 장사, 파트타임 직업을 본인 또는 부인이 가지고 있다 □
- 특별한 대가나 혜택을 주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 □
- 공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재정적인 의무관계를 지고 있다 □
- 직장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다른 기관의 임원을 맡거나, 출강하신 적이 있다 □
- 친구나 선배 등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남에게 일 처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
- 부패한 행위를 하면 발각되는 경우보다 발각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
- 부패한 행위로 인해 체포되더라도 실제로 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생각한다 □
- 우리 사회에서는 양심을 지키며 살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 □
-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특출나게 더 큰 사회적 사명과 보람, 명예가 있는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호구지책일 뿐이다 □



## □ 부패 위험도 점수 해석법

자기 진단 결과 부패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부패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낮게 나온 사람들에 비해 부패의 유혹에 빠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자기 진단 결과 부패 위험도가 높게 나온 사람은 자신이 그런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소의 직장 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의 대인관계 방식과 업무 처리 방식을 바꿔 간다면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라고 응답한 개수가,

- 7개 이상 -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각적인 생활 및 업무 방식과 태도의 변화를 꾀하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책이 상당한 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이라면 비교적 그렇지 않은 직책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 4개~6개 - “대체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매사에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십시오.
- 2개~3개 - “대체로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라고 응답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만큼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0개~1개 - “매우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부패의 유혹은 언제라도 당신을 혼미케 만들 수 있습니다.

### 3. 개인차원의 부패 대처 지침

#### □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자

식품위생분야 업무수행 중 부패 가능성이 있는 그러나 거절하기 어려운 청탁이나 지시에 부딪힌 경우에 공무원행동강령을 내세우면 쉽게 대처할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 예방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첫째, 부패 유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사전에 금지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부패행위를 예방해준다.

둘째, 개인적으로는 부패유발 요인의 유혹에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부패유발행위 유혹에 저항하도록 도와주는 공식적 도구이다.

#### ▶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적용범위(표준안 제3조)

-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제외) 및 지방공무원
  - 인권위, 감사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도 적용대상이다.

##### 2)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표준안 제4조)

- 「위법한 지시」의 경우는 복종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학계의 통설이다.
-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단, 이행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한다.
  -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필요시 지시의 취소·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표준안 제5조)

- 직무가 자신이나 4촌 이내 친족이 관련된 경우에는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

관과 회피 여부를 상담한 후 처리한다.

- 소속기관장은 인력 재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표준안 제14조)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이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 통상적 관례의 경우 등은 제외한다.
-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금품 등이 가족을 통해서도 접수되는 점을 감안,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받지 않도록 공무원 본인이 주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5) 외부강의 등의 신고(표준안 제15조)

- 연간 통산 3개월 이상 월 4회(또는 8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강의가 아니더라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강의 대가를 받은 때에는 사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 6) 금전의 차용 금지(표준안 제16조)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를 받을 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금전 차용과 부동산 대여를 받을 수 있다.

#### 7) 경조사와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표준안 제17조)

-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사항을 통지할 수 없다.
  - 친족, 현재·과거 근무기관 소속 직원, 신문·방송 통지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한 기준을 넘어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다.
  - 친족간, 소속 친목단체,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는 금품 등은 제외

## □ 부패기회를 차단하자

부패는 기회의 범죄로 스스로 기회를 멀리하면 부패는 오지 않는다. 다음 4가지 부패의 기회를 차단하라.

### [그림 4-4] 부패기회의 차단

1. 적용의 기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라)
2. 뇌물제공의 기회 (업주 등 민원인과의 사적인 접촉을 피하라)
3. 은폐의 기회 (업무처리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라)
4. 방심의 기회 (항상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 □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

식품위생분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뇌물과 특히 식품위생분야 특성에 의해 향응을 제공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제1단계 : 뇌물 및 향응제공자의 제공의 원인을 밝힌다

- 우선 뇌물 및 향응제공자의 제공 원인을 밝히고 세부사항들을(업소명, 업주명 등) 기록해두어야 한다.
-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수사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제2단계 : 뇌물과 향응을 거절한다

- 부패방지위원회나 사법기관에 신고하기에 앞서 뇌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뇌물을 거절하라.
- 뇌물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대화 및 논의를 피하라. 침착하게 말을 아끼고 분별

력 있게 행동하라.

- 당신이 뇌물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당신에게 뇌물을 주고 황급히 떠나버린 경우) 이러한 경우, 당신은 뇌물을 가지고 있어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뇌물로 받은 돈이라든지 선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3단계 :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한다

-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자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경우,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뇌물제공자가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목격자로 확보해라.

#### 제4단계 : 문서화된 기록을 준비한다

-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식적 문서로 남겨라. 왜냐하면 법원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할 때, 최초의 기록은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 이는 당신이 뇌물을 유용하려 했다든지, 당신측에서 우선 뇌물이나 향응을 요구했다는 차후의 혐의를 없앨 것이다.

#### 제5단계 : 기관장을 통하거나 부패방지위원회에 직접 신고한다

- 뇌물이나 향응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소속기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 기관·감사원 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읽어보기 둘.

### ▶ 청탁자와의 전화통화 대응법

〈표 4-1〉 청탁자와의 전화통화 대응법

청탁자	답변 요령
긴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응 그런데 사무실 전화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
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하지
내일 오후(오늘 저녁) 시간 있어?	선약이 있어 (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3번까지 반복)
그 정도 위치면 해결 수 있잖아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화 한통만 해주면 되는데.....	1. 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전화해도 그 쪽에서 들은 척도 안해. 그러면 나만 우습게 돼 2. 전에 비슷한 일로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전화했다가 정식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안돼. 3. 그런 전화하면 그 쪽에서 내 이름과 직급을 다 적어 놓았다가 거꾸로 우리에게 전화한다니까
식사나 한 번 하자 (거절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 앞으로 와. 그리고 우리 내부 규정상 밥값은 내가 내야 되니까 내가 적당한 데 예약해 놓을게.

□ 읽어보기 셋.

▶ 부패행위 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처세술

[그림 4-5] 부패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처세술

<p>거기 있으면서 그 정도 힘도 없어?</p>	<p>&lt;응답법&gt; 응. 없어. 미안해 &lt;유의점&gt; 이 경우 자존심을 세울 필요 없다.</p>
<p>알고보니 완전히 꽉 막혔네</p>	<p>&lt;응답법&gt; 그래 공무원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어 &lt;유의점&gt; 이런 경우도 자존심을 세울 필요 없다.</p>
<p>세상이 다 그런데 왜 혼자만 잘난척 해</p>	<p>&lt;응답법&gt; 세상이 다 그럴기는. 그런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럴지. 우리 사무실에는 그런 사람 한명도 없어 &lt;유의점&gt; 잘못된 가정에는 단호하게 반박하라.</p>
<p>사람이 너무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못써</p>	<p>&lt;응답법&gt;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어찌겠어. 이러는 게 나한테는 편하고 맞는데 &lt;유의점&gt; 자신의 인생관을 내보여라.</p>
<p>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언젠가 너도 아 쉬운 소리 할 때가 있을 거야</p>	<p>&lt;응답법&gt; 나도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불우 이웃돕기 성금도 꼬박 내고 있어. 그리고 사무실 동료나 상사들과도 잘 지내. 그러니 걱정 마. &lt;유의점&gt; 터무니없는 비난은 일축한다.</p>

□ 읽어보기 넷.

사례 1	뇌물 수수에 대한 허위 투서 감사 결과
<p>○○광역시 A 구청 위생과장이 당한 이야기로 처음 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은후, 그 과장은 업무파악을 위해 직접업소들을 방문하였고, 그런 김에 이것저것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 지적도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문제는 평소 과장들이 안 하던 행위를 한 데서 발단되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과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겨우는 없었는데, 새로 온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서는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더니 시정조치까지 내리게 되자 해당 업주는 감사원에서 그 과장이 뇌물을 받기 위해 관내 위생 점검을 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투서를 하였고 그 담당과장은 이러한 사안으로 당시 내무부로부터의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감사결과 밝혀진 것은 그 과장은 전혀 뇌물을 받은 바 없고, 문자 그대로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평소에 계장급 이하 직원들을 통해 상납하며 얼렁뚱땅 넘어 가며 사업하던 업주가 새로 부임한 깐깐한 과장 때문에 상황이 어렵게 됨이 규명되었고 다행히도 그 과장은 평소 청렴하고 고한 사람으로 상급자나 동료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기에 그 모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설령 그 업자에게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락없이 당할 뻔했다는 게 그 사안을 담당했던 본청 감사관의 말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법원 판결 1985. 5. 14. 83도2050)</p>	

□ 읽어보기 다섯.

사례 1	전국 2만여 다방이 윤락행위 관련 티켓다방이라는 국회의원 주장
<p>전국 다방의 절반 이상이 불법 윤락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 ○○○ 의원은 전국 3만 6천 여개의 다방업소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이 『티켓다방』이라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티켓다방』의 70% 이상이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다며 상당수 시·군 지역의 경우 다방업소 전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 정무위 소속 ○○○ 의원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정감사, 시사문화신문 2003. 10. 20. 기사)</p>	



## 토론해 봅시다

개인적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토론해 봅시다.

부패발생 기회를 차단하는 기술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개인 부패 위험도 점수를 낮추는 방안을 토론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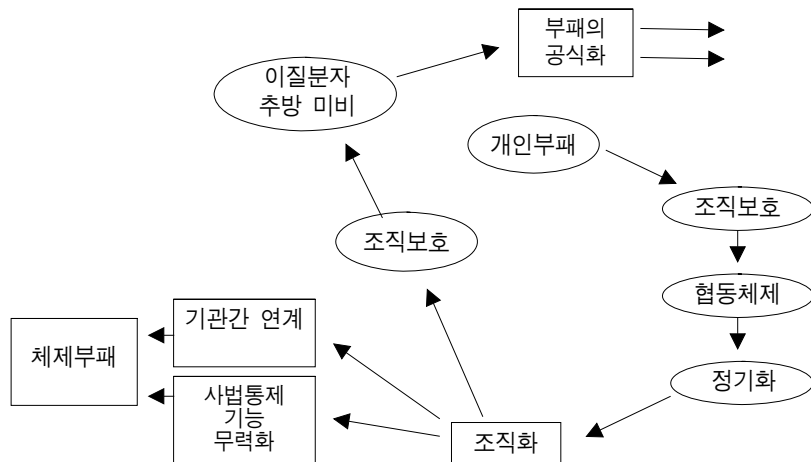
## 제2장 조직적 극복 가이드

이 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일로 대민 접촉이 잦은 식품위생분야 공직자들의 조직차원의 부패 발생 순환 구조와 부패 발생 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식품위생분야 조직부패의 생성

- ▶ 흠탕물 속에서 나만 홀로 깨끗하길 바랄 순 없다. 흰 백조 한 마리는 검은 까마귀들 틈에서 배척받기 마련이다.
- ▶ 부패한 조직은 범죄에 연루된 공동운명체적 성격 때문에 유대감과 결속력이 유난히 강하며 자신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을 배척하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청렴한 공무원이 오히려 조직에서 설자리가 없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 ▶ 조직부패는 그 자체로서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하기는 매우 어렵다.
- ▶ [그림 4-6]에는 조직부패의 순환구조가 그림으로 제시되어있다.

[그림 4-6] 조직부패의 순환구조



자료: 김용세, 『공직부패의 개념, 유형과 구조』, 1998.

- ▶ 부패한 조직원의 일부를 제거하더라도 조직의 부패구조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들은 부패한 체제의 기득권층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부패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은 자동적으로 부패관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인부패와 조직부패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닌 것이다.
- ▶ 또한 조직부패는 체제부패로 발전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사실상 조직부패와 체제부패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조직부패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조직 사이의 연계 또는 협동하는 체제부패로 발전하게 되지만 감시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회에서는 조직부패가 체제부패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 ▶ 나 혼자 깨끗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부패한 조직에서 영원히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결국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깨끗하게 해야만 나도 깨끗할 수 있는 것이다.

□ 읽어보기 하나.

사례 1	신입 공무원의 고민
<p>정○○(33, 7급)씨가 공무원 임용 후 처음 배치 받은 곳이 모 중앙행정기관의 한 지방사무소의 민원 창구였다. 각종 인·허가와 징수 업무를 맡아 몇 개월을 의욕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던 정씨는 어느 날 옆 창구에 앉은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이 달부터는 50만원씩의 회비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어디에 쓰는 회비인지 물었더니 모아서 뒤에 앉아 있는 계장, 과장들에게 상납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난감해하는 정씨에게 회비를 민원인들로부터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졌다.</p> <p>그날 저녁 선배 공무원들과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정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은 민원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자고 공무원이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세상이 다 그런데 혼자서 뽀족하게 굴면 찍히기밖에 더하겠느냐’, ‘그런 식으로는 조직 생활을 순탄하게 하기가 어렵다’, ‘윗사람들이 너를 믿고 일을 시키겠느냐’ 등이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부패방지위원회(2003), 「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p>	

## 2. 조직의 부패위험도(DCRA) 진단

### □ 기관의 부패위험도(DCRA: Degree of Corruption Risk for Agencies)

다음의 각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시면 “예” 또는 동의하지 않으시면 “아니오”로 답해 보시고 “예”라고 답한 것이 몇 개나 되는 지를 합산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점수 해석법을 보시고 당신이 어느 정도나 부패의 기회가 제공되는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 [그림 4-7] 기관의 부패위험도 진단표

- 우리 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민원 업무는 그 절차가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전혀 까다롭지 않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다 □
- 우리 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민원 업무는 그 처리 기준이나 절차, 과정이 어느 민원인들에게든지 잘 공개되고 있다 □
- 우리 기관에는 소속 직원들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인들로부터의 이의 제기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잘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도 잘 운영되고 있다 □
-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를 다른 사람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과정이 잘 설계되어 있다 □
- 우리 기관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당한 처사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며,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그에 대해 단호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치밀하게 잘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잘 시행되고 있다 □
- 우리 기관의 소속 직원이 부패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부 고발 절차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잘 운영되고 있다 □
- 우리 기관의 소속 직원들 대부분은 공무원 부패와 관련된 모든 법규와 준수사항 및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다 □
- 우리 기관에 특수한 부패 행위를 소상히 적시하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부패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부패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또한 부패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이 따를 것인지 등을 소상하게 담고 있는 반부패 행동 지침서가 우리 기관에 잘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기관의 직원들은 그 지침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 □
- 우리 기관의 장이나 고위 간부들은 모두 부패 문제에 관한 한 정말로 내가 본받을 만한 정도로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다 □
- 우리 기관의 장이나 고위 간부들은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부패 문제에 대해 늘 주의를 기울이며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 □

## □ 부패 위험도 점수 해석법

- ▶ 진단 결과, 기관의 부패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관에 부패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낮게 나온 기관에 비해 소속 직원들의 부패 행위를 가능케 하는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 ▶ 진단 결과, 부패 위험도가 높게 나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무 재설계 작업이라든가 관련 제도의 도입 등 조직 차원의 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부패로부터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7개 이상 - “매우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만은 금물입니다. 부패의 기회는 조직의 극히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결국 조직 전체를 물들게 합니다.
  
- 4개~6개 - “대체로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만큼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2개~3개 - “대체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 0개~1개 -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각적인 조직 혁신을 기해야 합니다. 만일 그런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기관이나 부서라고 판단하신다면 소속 조직을 옮기시는 대안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합니다. 그런 조직에 있다가 평생 후회할 부패에 연루되는 것보다는 다소 힘들더라도 당당한 공무원의 삶이 훨씬 더 가치있는 일이니깐요.

### 3. 조직차원의 부패 대처 지침

#### 동료나 상사의 부패를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먼저 명령 계통을 통해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감사관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한다.
-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패방지위원회에 내부공익신고의 형태로 신고한다. 만일 처음부터 명령 계통 전체가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이 되거나 보고 결과 조직적 박해가 예상된다면 부패방지위원회에 곧장 내부공익신고를 한다.

#### 1) 내부공익신고(Whistle blowing)

##### □ 정의

- ▶ 내부공익신고는 내부공익제보 또는 내부비리제보라고도 지칭된다. 한 집단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 ▶ 과거에 조직의 구성원이었거나 또는 현재 그러한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와 국민을 속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직내부에서의 시정노력이 거부당하거나 좌절되었을 때 외부에 그러한 문제를 호소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 내부공익신고의 중요성

- ▶ 내부공익신고는 부패를 예방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일반 신고에 비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부패예방과 처벌에 가장 효율적이다.

▶ 내부공익신고는 사회와 개인에게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 내부공익신고에 의한 정부나 기업 내의 비리 폭로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고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 및 개인에게 까지 이익이 된다.

▶ 내부공익신고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 내부공익신고로 인해 조직내 정책결정 및 집행에 민주화 및 투명화가 이루어지며 결국 공직 및 사회 전반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이 정착되고 확산된다.

▶ 내부공익신고가 전통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고자질이나 밀고는 힘있는 상대에게 또는 적에게 자신만이 살길을 찾기 위하여 동료나 직장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에게 내부의 비리를 알리는 것은 힘이 있는 자나 고위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 우리의 전통적 가치는 부정과 비리를 보아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에 있지 않다. 또한 조직이나 동료에 대한 의리, 그것도 부정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패거리적 정의나 의리보다는 국가나 사회, 내부에 그러한 비리가 없다고 믿는 일반시민들에게 대한 의리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상사나 조직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납세자인 시민들에 대한 봉사자이다. 따라서 상관이 불법한 일을 시키거나 그러한 일을 관여하는 것을 보면,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읽어보기 둘.

사례 1	어느 참 공무원의 눈물
<p>“그 때 내가 좀더 버텼더라면 천사같은 애들을 이처럼 어이없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 경기도 화성군 전 부녀복지계장 이장덕(40, 민원계장)씨는 5일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불법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언하며 회한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틀간 경찰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풀려난 이씨가 공개한 비망록은 부녀복지계장으로 재직 중 씨랜드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과장 등으로부터 받은 압력과 회유, 그로 인한 괴로움을 생생하게 적어 놓았다.</p> <p>1997년 7월 장안면사무소에서 화성군 부녀복지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씨는 두달 뒤인 그 해 9월부터 위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씨랜드가 제출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 신청서를 즉각 처리해주라는 것. 하지만 이씨는 씨랜드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문제점 투성이어서 끝까지 버텼고 이후 담당과장과 씨랜드측의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다.</p> <p>“당신이 군수야, 뭐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허가가 안 되면 안 되는 법을 찾아오란 말이야.” 상사의 협박은 시작에 불과했다. 험상궂게 생긴자들이 사무실을 수시로 찾아와 무언의 협박을 가했으며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전화가 집으로 걸려와 친척집으로 피신하기도 했다.</p> <p>이씨는 지난해 설날연휴를 앞두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씨랜드측이 보내온 10만원짜리 수표 5장이 든 봉투를 전해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보냈다. 이런 상사들의 압력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이씨도 수련원시설을 허가하는데 사인했으나 이후에도 씨랜드측의 불법행위가 목인되자 지난해 10월 민원계장으로 자원해 이동했다. 이씨는 “공직사회의 이런 비리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작성한 비망록이 공개됐지만, 다른 공무원들의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공무원인 남편(43)과 1남 2녀를 두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부패방지위원회(2003), 「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p>	

## □ 내부공익신고자의 8가지 행동수칙

### 행동수칙 1. 가족과 상의한다.

- 거부나 항의를 하는 단계를 밟고자 하는 경우, 먼저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가족들과 의논한다. 내부고발 후 가장 심각한 것은 가족들의 고통이다.

### 행동수칙 2. 조직내부 문제를 조정, 시정하는 절차가 있다면 서면절차를 받는다.

- 공익내부고발을 하기에 앞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조직내부에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 그러나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시정은 되지 않고 도리어 은폐할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되거나 자신만 고립되는 결과만 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행동수칙 3.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 낭비나 부정한 활동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는 또 다른 동료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조심스럽게 이들에게 얘기를 건네본다. 의심하고 있는 바가 사실인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 행동수칙 4. 다른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사무실의 경리, 서무직원 혹은 타부서의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비리에 대한 깊은 내막의 정보를 알고 있다. 또 당신의 지지세력이 될 수 있다.

### 행동수칙 5. 매일매일 기록을 남긴다.

- 호루라기를 불기 전후해서는 자신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보복적 사건들에 대하여 매일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쓴다. 이러한 준비는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

#### 행동수칙 6. 증거를 모으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한다.

- 자신이 의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를 모은다. 낭비나 부정에 대한 폭로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접근하는 길이 차단될 수 있다. 끝까지 익명으로 남아 있을 계획이라 하더라도, 모든 기록들을 복사하여 두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가 일단 폭로되면 그러한 문서들은 모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행동수칙 7. 내부비리폭로 과정에서 도움을 줄 단체나 기관 등을 알아본다.

- 부정을 폭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정치인, 신문사, 내지 관련 시민단체들을 면밀히 조사해 놓는다. 내부고발자는 법적 권리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뜻을 성공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때 승리할 확률이 높다.
- 내부비리 폭로로 인해 시민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는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행동수칙 8.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 변호사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얻어 보거나, 비영리시민단체에서 만일 폭로할 경우 자신에게 일어날 보복에 관하여 들어본다.
- 성공적인 방어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폭로를 위하여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증거에 어떤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점검을 받아 본다.
- 이와 같은 문제들을 철저하게 검토한 뒤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리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해야하는지 잘 알아두는 길뿐이다.

###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제도

- ▶ 행정조직내부의 심각한 잘못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부패행위를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제보자 자신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 제보에 따른 조치 결과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대상가액

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 지급한다.

▶ 하지만 내부공익신고가 그렇게 쉽게 활성화되기는 한국적인 정서상 어려운 점이 많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조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신고자는 조직내부에서 “왕따를 당하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내부공익 신고자 스스로도 조직의 “배신자라는 인식을 갖기도 한다.

▶ 내부공익신고는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분보호가 대단히 중요하다.

▶ 신고자 비밀보장

- 보장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 보장내용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조치사항 :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시 위원회 심사과정 및 조사기관 이첩시에 인적 사항 기재 생략
- 비밀공개여부 확인
  - 위원회에서는 신고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 및 필요한 조치 강구

▶ 신고자 신분 보장

- 보장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 보장내용 :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전직 및 인사교류
- 보장절차 :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자의 요구서 접수(보호보상과) → 위원회 조사·확인 → 심의·의결 → 의결사항을 요구자 및 해당기관에 통보 → 신분보장 조치
- 조치사항 : 원상회복, 전보·전직, 인사교류 등 요구(권고)

□ 읽어보기 셋.

사례 1	파출소장의 항응 수령과 뇌물수수
<p>원고 모씨는 1995. 3. 8.부터 1997. 3. 2.까지 ○○남부경찰서소속 파출서장으로 근무하고, 1997. 3. 3부터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위 파출서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7. 2. 11. 19:00경 ○○시청 뒤 ○○식당에서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A)가 주점을 경영하는 ○를 잘 봐주라며 소개하자, 경위(A)로부터 같은 파출소 경장(B)가 함께 음식 4인분 등과 금 200,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B)이 주점 업주 ○과 헤어지면서 업주로부터 파출소 운영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다음날 위 파출서 갑부 부소장인 경장(C)와 을부 부소장인 경장(D)에게 위 주점업주가 준 것이니 나누어 쓰라고 하면서 각각 금 500,000원씩 나누어주고, 원고에게 금 800,000원을 교부하자 원고가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식당업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파출소 소속 경장(B)을 통하여 받은 돈이 적지 아니한 액수이므로, 원고는 위 파출소 관내 업소의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파출소장으로서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경영자로부터 적지 아니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이 관내 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정히 단속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경찰의 관내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관내 유흥업소 주민은 물론이고 당해 경찰관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조차 법적용의 공정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p> <p>그러므로 설날 며칠 뒤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관내 업소 경영자로부터 금 80만원을 교부받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p>	

## 2) 소속기관장에 보고와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 ▶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서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 ▶ 그리고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는 즉시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면 된다.
- ▶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소명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 또한 공무원은 누구든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 ▶ 공무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마련된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처의 감사관련 공무원이 담당하며,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장이 겸임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상담내용을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 토론해 봅시다

□ 내부공익신고를 정착화시키기 위한 조직문화의 변화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조직적 차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무엇인지를 토론해 봅시다.

## 제3장 외부적 극복 가이드

개인으로서도 대처하기 곤란하고, 조직내부에서도 부패에 대처하기 어려울 경우, 부패방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 1.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2001년 7월 제정)에 따라 2002년 1월 25일 발족하였으며,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서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 부패방지위원회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중립적인 부패방지 대책 중심기구 역할의 역할을 수행하며,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권력주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 그리고 우리 역사상 내부고발자 보호 보상제도를 최초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 ▶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그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 일반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및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무원 모두 상세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2. 일반공직자의 부패신고

### □ 부패행위의 신고

- ▶ 누가 : 부패행위를 알게 된 누구나
- ▶ 공직자의 신고의무
  -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확인·조사

- ▶ 신고 접수 후 30일 동안 신고인, 참고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조사

### □ 신고사항 이첩

- ▶ 부패혐의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및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독관청에 신고사항을 이첩해 조사를 요구

### □ 조사결과의 통보

- ▶ 이첩 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 후 10일 이내에 부패방지위원회에 결과를 통보

### □ 조사결과의 처리

- ▶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
- ▶ 관계자의 징계 등 조치 필요시 해당기관에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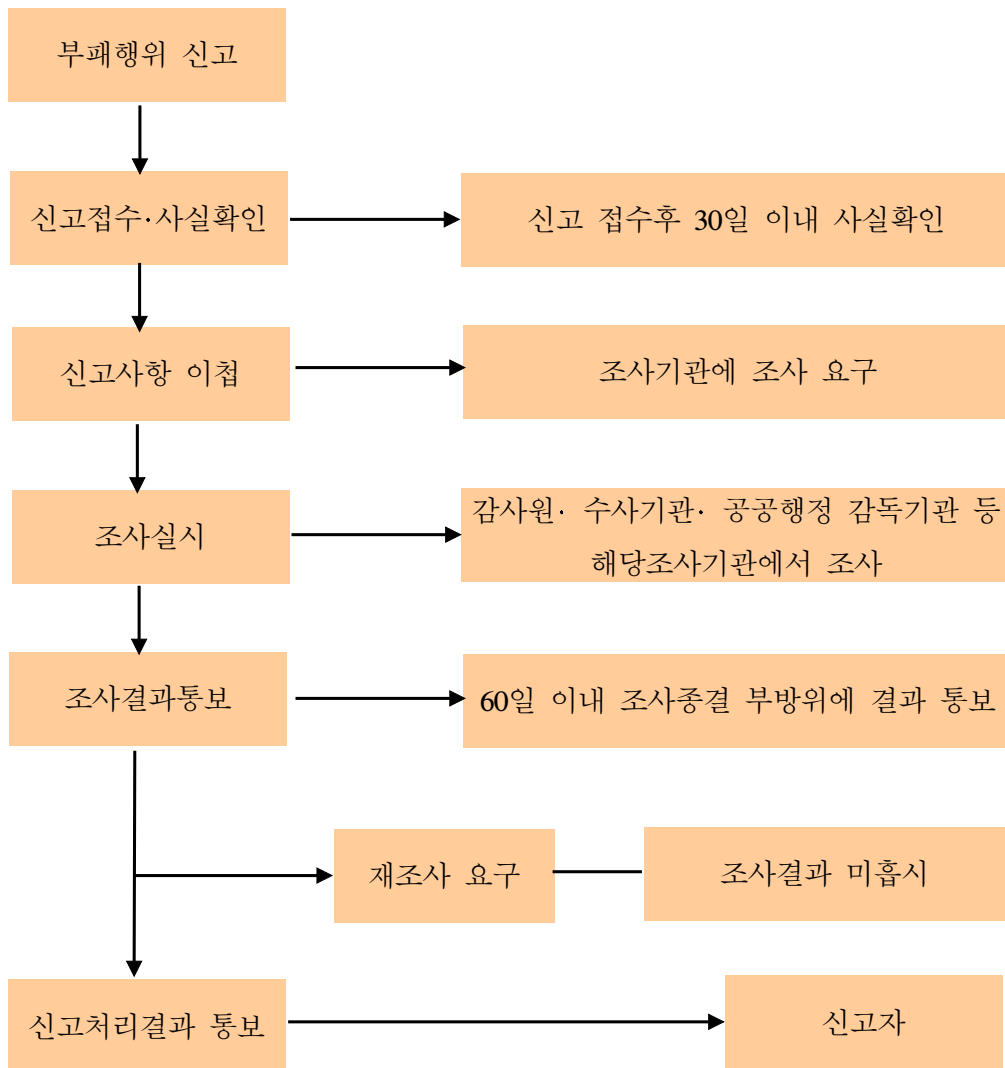
### □ 미흡한 조사에 대한 요구

- ▶ 부패방지위원회: 14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
- ▶ 신고인: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 3. 부패신고 처리절차

#### □ 일반공직자 부패신고사건 처리절차

[그림 4-8] 부패신고사건 처리절차



## 4.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 □ 대상 고위 공직자

- ▶ 차관급 이상 공직자
-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 ▶ 법관, 검사
- ▶ 장관급 장교
- ▶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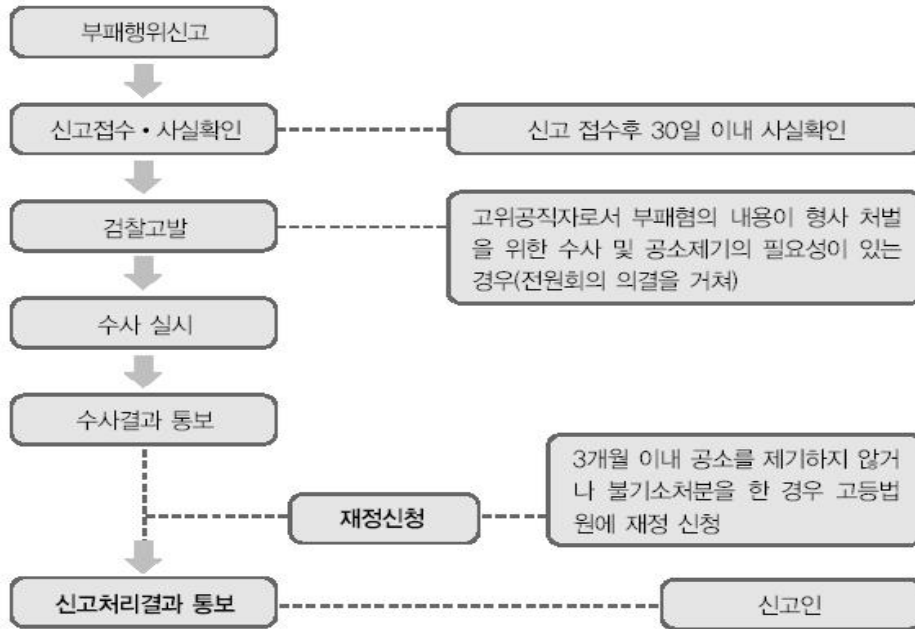
### □ 고위 공직자의 직접 고발

- ▶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부패방지위원회는 접수 후 30일 동안 신고인, 이해관계자,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부패혐의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및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검찰에 직접 고발한다.

### □ 고등법원 제정신청

- ▶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위원회는 전원회의 의결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림 4-9]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사건 처리절차



## 5. 부패행위의 신고방법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 부패방지법 제26조에 의거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부패행위 신고방법

- ▶ 직접방문 : 부패방지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시티타워 15층  
『부패방지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앞
- ▶ 팩스 : 02)2126-0098~99
- ▶ 인터넷 이용 :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http://www.kicac.go.kr))를 통해 신고
- ▶ 출장신고접수 : 신고인이 원할 경우 위원회 직원이 찾아가서 신고·접수

### □ 부패 신고상담

- ▶ 부패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전화 : 국번없이 02-1398(“일상고발”)

## 토론해 봅시다

□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부패발생 신고의 절차와 제반 요건을 토론해 봅시다.

# 부록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과 관련법규의 윤리  
규정을 정리해 봄으로써 부패극복을 위한 개개인의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 제5부 부록내용

- 식약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 공무원 관련 윤리규정
- 부패방지법 및 시행령
- 조사표

## [부록 1]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청렴유지 행동강령

### 〈부표 1-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개요

구 분	근거법령	주 요 내 용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지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조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특혜의 배제	제6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됨.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9조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됨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됨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1조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됨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안됨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공공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3조	▶공무원은 관공 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실험시설 등 공공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88호(2003년 5월 12일)



〈부표 1-1〉 계속

구 분	근거법령	주 요 내 용
<p>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p>	<p>제14조</p>	<p>▶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li> <li>2.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속·지도·민원근무 공무원은 제외)</li> <li>3.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li> <li>4.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li> <li>5.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li> <li>6.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된 금품</li> </ol> <p>▶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li> <li>2.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이내)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li> <li>3.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li> <li>4.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li> <li>5.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li> <li>6.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li> <li>7.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li> <li>8.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li> <li>9.그 밖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li> </ol> <p>▶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p>
<p>외부 강의 등의 신고</p>	<p>제15조</p>	<p>▶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 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함</p> <p>▶공무원이 위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됨</p> <p>▶공무원은 위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p>

〈부표 1-1〉 계속

구 분	근거법령	주 요 내 용
금전의 차용금지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 제외)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안됨.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li>▶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li> </ul>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안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족에 대한 통지</li> <li>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li> <li>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li> </ol> </li> <li>▶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됨.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li> <li>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li> <li>3. 환경부장관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장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li> </ol> </li> </ul>

## [부록 2] 공무원 관련 윤리규정

### □ 공직자윤리법상 윤리규정

#### 〈부표 2-1〉 공직자윤리법상 윤리규정

구 분	근거법령	주 요 내 용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14조의2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됨
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제15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함.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음

자료: 법률 제06861호(2003년 3월 12일) - 공직자윤리법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윤리규정

#### 〈부표 2-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윤리규정

구 분	근거법령	주 요 내 용
근무기강의 확립	제3조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함.
친절·공정	제4조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영리업무의 금지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음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자료: 대통령령 제17582호(2002년 4월 18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 국가공무원법상 윤리규정

### 〈부표 2-3〉 국가공무원법상 윤리규정

구 분	근거법령	주 요 내 용
성실의무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복종의 의무	제57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직장이탈금지	제58조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친절공정의 의무	제59조	▶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직무하여야 함
비밀엄수의 의무	제60조	▶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청렴의 의무	제61조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됨
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제62조	▶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함
품위유지의 의무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자료: 법률 제06855호(2003년 2월 4일) - 국가공무원법.

### [부록 3] 부패방지법 및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부패방지법</b></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4호</p>	<p style="text-align: center;"><b>부패방지법 시행령</b></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01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17420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 (목적)</b>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 (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li> <li>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li> <li>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li> <li>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li> </ul> </li> <li>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li> <li>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li> </ul> </li> <li>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li> </u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 (목적)</b> 이 영은 부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p><b>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li> <li>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li> <li>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li> <li>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li> </ol> <p><b>제4조 (정당의 책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li>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li> </ol> <p><b>제5조 (기업의 의무)</b></p> <p>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b>제6조 (국민의 의무)</b></p> <p>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b>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b></p> <p>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b></p> <p>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li> <li>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li> <li>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li> <li>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9조 (공무원의 생활보장)</b></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b>제2조 (공무원 행동강령)</b></p> <p>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부패방지위원회</b></p> <p><b>제10조 (설치)</b>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b>제11조 (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사항의 수립·권고</li> <li>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평가</li> <li>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li> <li>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li> <li>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li> <li>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li> <li>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li> <li>8.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부패방지위원회</b></p> <p><b>제3조 (부패방지시책의 수립)</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i> <li>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li> </ol> <p><b>제4조 (실태조사·평가)</b> 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작업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b>제5조 (부패방지 교육)</b>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12조 (위원회의 구성)</b></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은 국회의, 3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p> <p>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p> <p><b>제13조 (위원장)</b></p> <p>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b></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li> <li>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li> <li>3. 정당의 당원</li> <li>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li> </ol> <p>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p>	<p><b>제6조 (위원의 자격기준)</b></p> <p>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라 함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3.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4. 그 밖에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 등 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li> </ol> <p><b>제7조 (위원장의 직무)</b></p> <p>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15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b></p> <p>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p> <p>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p> <p>1.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p> <p>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p> <p>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p> <p><b>제16조 (위원회의 의결)</b></p> <p>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8조 (위원회의 회의)</b></p> <p>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b></p> <p>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p> <p>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p> <p>2. 친족·호주 및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p> <p>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p> <p>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17조 (분과위원회)</b>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b>제18조 (전문위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li> <li>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li> </ol> <p><b>제19조 (사무처의 설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li> <li>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li> <li>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li> <li>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li> <li>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⑤ 위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li> <li>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li> </ol> <p><b>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li> <li>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i> <li>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li> <li>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li> </ol> <p><b>제11조 (사무처 직원의 선발 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청렴성·도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li> </ol>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20조 (제도개선의 권고)</b></p> <p>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p> <p><b>제12조 (위원회 윤리규정 등)</b></p> <p>① 위원회는 위원·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패방지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b>제13조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b></p> <p>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21조 (의견청취 등)</b></p> <p>① 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li> <li>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li> </ol> <p>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li> <li>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 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 처분·보호감호 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li> <li>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li> <li>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li> <li>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li> </ol> <p>③ 제1항 각호의 조치는 제11호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p>	<p><b>제14조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b></p> <p>① 위원회는 법 제 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b>제15조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b></p> <p>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b>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b>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b>제24조 (조직 및 운영)</b>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6조 (자문기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li> <li>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li> </ol> <p><b>제17조 (수당 등)</b>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위원,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18조 (운영세칙)</b>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b></p> <p><b>제25조 (부패행위의 신고)</b>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p> <p><b>제2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b>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2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b>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p> <p><b>제28조 (신고의 방법)</b>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b></p> <p><b>제19조 (대표자의 선정)</b>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29조 (신고의 처리)</b></p> <p>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li> <li>2. 신고내용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li> </ol>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고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li> <li>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li> <li>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li> <li>4. 법관 및 검사</li> <li>5. 장관급(將官級) 장교</li> <li>6. 국회의원</li> </ol>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b>제20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b></p> <p>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li> <li>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li> <li>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li> <li>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li> <li>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li> <li>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li> <li>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li> </ol> <p>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b>제21조 (신고의 보완)</b></p> <p>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2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22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b></p> <p>① 위원회는 법 제29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li> <li>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li> <li>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li> </ol> <p>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p> <p>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23조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b></p> <p>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li> <li>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li> <li>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li> <li>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li> </ol>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24조 (조사기관의 처리)</b></p> <p>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조사기관은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그 기관이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p> <p><b>제25조 (조사결과 등의 통보)</b></p> <p>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li> <li>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li> <li>3.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거나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li> <li>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li> <li>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li> </ol> <p>②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30조 (조사결과의 처리)</b></p> <p>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b></p> <p>①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 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27조 (이의신청)</b></p> <p>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자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31조 (재정신청)</b></p> <p>①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b>제28조 (재정신청의 절차 등)</b></p> <p>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32조 (신분보장)</b></p> <p>①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li> <li>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li> <li>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li> </ol> <p>⑤ 제4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	<p><b>제29조 (신분보장조치의 요구)</b></p> <p>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b>제30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li> </ol> <p><b>제31조 (신분보장조치의 결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i> <li>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li> <li>③ 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 요구인의 신분 등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li> </ol>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32조 (조치결과의 통보 등)</b></p> <p>① 위원회로부터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p> <p><b>제33조 (신고자 비밀보장)</b></p> <p>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33조 (신변의 보호)</b></p> <p>① 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b>제34조 (협조자 보호)</b></p> <p>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35조 (책임의 감면)</b></p> <p>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b>제34조 (신변보호)</b></p> <p>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36조 (포상 및 보상)</b></p> <p>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p> <p>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b>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b></p> <p>① 위원회는 보상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li> <li>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li> </ol> <p>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b></p> <p><b>제35조 (보상사유)</b></p> <p>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li> <li>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li> <li>3.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에 의한 환수</li> <li>4.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 처분을 제외한다.</li> </ol> <p>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p> <p><b>제36조 (대표자의 선정)</b></p> <p>위원회는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p> <p><b>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b></p> <p>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인, 당연직 위원 4인 및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p> <p>② 보상위원장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③ 재정경제부·법무부·기획예산처 및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b>제38조 (보상위원장)</b></p> <p>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39조 (보상위원회의 회의)</b></p> <p>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보상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38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b></p> <p>① 위원회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40조 (보상금의 결정)</b></p> <p>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li> <li>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li> <li>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li> <li>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li> </ol> <p>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1천원 단위 이하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b>제41조 (공직자 보상금의 감액)</b></p> <p>①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제외한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b>제42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b></p> <p>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3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b></p> <p>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p> <p>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 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p> <p>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p>	<p><b>제43조 (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b></p> <p>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p> <p><b>제44조 (보상금의 지급시기)</b></p> <p>보상금은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p> <p><b>제45조 (보상금의 지급절차)</b></p> <p>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b>제46조 (보상금의 환수)</b></p> <p>위원회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li> <li>2.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li> <li>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li> </ol>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국민감사청구</b></p> <p><b>제40조 (감사청구권)</b></p> <p>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li> <li>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 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 처분·보호감호 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li> <li>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li> <li>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5. 그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국민감사청구</b></p> <p><b>제47조 (감사청구인)</b></p> <p>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라 함은 300인을 말한다.</p> <p><b>제48조 (감사청구 제외사항)</b></p> <p>법 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li> <li>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li> <li>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li> </ol>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41조 (감사청구의 방법)</b>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b>제42조 (감사실시의 결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li> <li>②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li> <li>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i> </ol> <p><b>제43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i> <li>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i> </ol> <p><b>제44조 (운영)</b>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49조 (감사청구의 방법)</b>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b>제50조 (감사청구서의 반려)</b>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보 칙</b></p> <p><b>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b></p> <p>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p> <p>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보 칙</b></p> <p><b>제51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b></p> <p>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5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b></p> <p>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5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b>제46조 (취업자의 해임요구)</b></p> <p>① 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b>제47조 (국회 등의 특례)</b></p> <p>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p> <p><b>제48조 (위임규정)</b></p> <p>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벌칙</b></p> <p><b>제49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b>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b>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 <li>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li> <li>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li> </ol> <p><b>제51조 (업무상 비밀누설죄)</b>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52조 (비위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b>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53조 (과태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li> <li>② 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li> <li>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i> <li>④ 제32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li> </ol>	<p><b>제53조 (과태료의 부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li> <li>②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li> <li>③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li> <li>④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li> <li>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li> </ol>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 (시행일)</b>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b></p> <p>①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으로 한다.</p> <p>②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방지위원회</p>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p data-bbox="799 383 1098 443"><b>[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b> (제40조 제1항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42 450 1326 786"> <thead> <tr> <th>보상대상가액</th> <th>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억원 이하</td> <td>10%</td> </tr> <tr> <td>1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7%</td> </tr> <tr> <td>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td> <td>3천8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5%</td> </tr> <tr> <td>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td> <td>1억1천3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3%</td> </tr> <tr> <td>40억원 초과</td> <td>1억7천3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2%</td> </tr> </tbody> </table> <p data-bbox="826 815 1361 936">※ 보상대상가액 :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가져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한다.</p> <p data-bbox="799 1021 1098 1081"><b>[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b> (제53조 제4항관련)</p> <p data-bbox="799 1088 922 1115">1. 일반기준</p> <p data-bbox="842 1122 1361 1205">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p> <p data-bbox="842 1211 1361 1294">나. 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p> <p data-bbox="799 1335 922 1361">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842 1368 1326 1637"> <thead> <tr> <th>위반행위</th> <th>과태료금액</th> </tr> </thead> <tbody> <tr> <td>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td> <td>1,000만원</td> </tr> <tr> <td>직위해제·강등·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td> <td>700만원</td> </tr> <tr> <td>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td> <td>500만원</td> </tr> <tr> <td>임금의 차별지급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td> <td>300만원</td> </tr> </tbody> </table>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7%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5%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3%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2%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강등·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500만원	임금의 차별지급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300만원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7%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5%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3%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2%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강등·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500만원																						
임금의 차별지급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300만원																						

[부록 4] 조사표

--	--	--

조사대상자 ID

##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 교재개발 연구』를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자료는 『식품위생분야』에서 발생하는 업소와 담당공무원간의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교재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시게 될 의견은 『식품위생분야』의 부정부패방지를 공무원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의견은 부패방지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신분도 철저히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김영래, 윤시몬 드림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 허가과정

1. 귀하께서 본 업소의 허가를 얻는 과정 중에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조속한 허가를 얻기 위해
- ②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 ③ 허가과정의 관례상
- ④ 기 타 \_\_\_\_\_
- ⑤ 그런 적이 없음

1-1. 단란주점 허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담당공무원은 누구인지 제공횟수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경찰공무원    ② 세무공무원    ③ 구청공무원
- ④ 소방공무원    ⑤ 검찰청공무원    ⑥ 기타\_\_\_\_\_
- ⑦ 그런 적이 없음

## 영업과정

2. 귀하께서 업소를 영업하는 중에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형태는?

- ① 업주 스스로의 상납
- ② 단속시 처벌 완화를 목적으로 상납
- ③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
- ④ 기 타 \_\_\_\_\_
- ⑤ 그런 적이 없음

3. 단란주점 영업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담당공무원은 누구인지 제공횟수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경찰공무원    ② 세무공무원    ③ 구청공무원
- ④ 소방공무원    ⑤ 검찰청공무원    ⑥ 기타\_\_\_\_\_
- ⑦ 그런 적이 없음

4. 「업주 스스로의 상납 형태」 부조리가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수사·정시 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 ② 수사·정시 점검의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 ③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 ④ 공무원의 자의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 ⑤ 기 타 \_\_\_\_\_

4-1. 귀하께서 「업주 스스로의 상납」형태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① 경찰공무원    ② 세무공무원    ③ 구청공무원
- ④ 소방공무원    ⑤ 검찰청공무원    ⑥ 기타\_\_\_\_\_
- ⑦ 그런 적이 없음

5. 귀하께서 「단속시 처벌 완화」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은 주로 누구인가?

- ① 경찰공무원    ② 세무공무원    ③ 구청공무원
- ④ 소방공무원    ⑤ 검찰청공무원    ⑥ 기타\_\_\_\_\_
- ⑦ 그런 적이 없음

6.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이 주로 요구되는 시기는?

- ① 휴가철 (휴가비 명목)    ② 업무인수 인계시
- ③ 명절 (떡값 명목)    ④ 경조사    ⑤기타\_\_\_\_\_

6-1.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시 금품 및 향응 대상은 주로 누구인가?

- ① 경찰공무원    ② 세무공무원    ③ 구청공무원
- ④ 소방공무원    ⑤ 검찰청공무원    ⑥ 기타\_\_\_\_\_
- ⑦ 그런 적이 없음

7. 귀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중에 관할 공무원에 대한 금품상납을 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 → 7-1번으로
- ②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다.(    ) → 8번

7-1. 관할 공무원에게 금품상납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였습니까?

- ① 불이익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 상납을 하였다.
- ② 부조리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다.
- ③ 가만히 있었다.
- ④ 기 타 \_\_\_\_\_

8. 귀하께서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 상납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만원 ~ 400만원
- ③ 400만원 ~ 600만원
- ④ 600만원 ~ 800만원
- ⑤ 800만원 ~ 1000만원
- ⑥ 기타
- ⑦ 그런적이 없음

9. 귀하의 업소를 단속하는 공무원 중 단속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은?

- ① 경찰공무원    ② 세무공무원    ③ 구청공무원
- ④ 소방공무원    ⑤ 검찰청공무원    ⑥ 기타\_\_\_\_\_
- ⑦ 그런 적이 없음

10. 단속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연말 연시                      ② 휴가철
- ③ 특정한 시기가 없음    ④ 기타\_\_\_\_\_

11. 단속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귀하의 업소에 공무원의 단속점검이 통보됩니까?

- ① 법규정을 통해    ② 공문을 통해    ③ 공무원의 사전 전화통보로
- ④ 타업소와의 연락을 통해    ⑤ 기타\_\_\_\_\_

12. 귀하업소가 불법영업을 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중복응답 가능

- ① 미성년자 고용
- ②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 ③ 여성종사자 불법채용
- ④ 건강진단 여부
- ⑤ 허가증 미부착
- ⑥ 내부시설관련(조명장치, 칸막이, 정화조시설, 전체 흡비율, 방문잠금장치 등)
- ⑦ 허가구역 위반
- ⑧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규위반
- ⑨ 위반한 적이 없음
- ⑩ 기타\_\_\_\_\_

13. 귀하께서 불법영업을 하고도 모면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미리 준비해 둔 금품 제공
- ②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
- ③ 정기적 상납이나 수시 상납에 따른 대가
- ④ 술접대 및 향응제공
- ⑤ 기타\_\_\_\_\_

14. 현행 공무원의 단속과정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행위에 대해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중복단속
- ② 영업방해식 단속
- ③ 단속공무원의 비전문성
- ④ 법규의 모순 내지 미비
- ⑤ 기타

15. 허가(신고)후 영업시 공무원 비리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단속공무원의 업소출입에 대한 사전예고제 시행
- ② 기간과 목적을 정하여 단속
- ③ 타업소의 직원과 동행하여 단속
- ④ 시민단체에 의한 단속
- ⑤ 정당한 단속시 출입실명제 실시
- ⑥ 기타

16. 식품공무원의 부패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패한 편임      ② 부패한 편임      ③ 보통임
- ④ 부패 안한편임      ⑤ 전혀 부패 안함편임

17. 식품담당공무원의 부정부패나 비리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① 반드시 신고함      ② 경우에 따라 신고함      ③ 신고안함

18. 식품관련 부패를 없애기 위한 우선과제를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제도개선
- ② 적발/처벌강화
- ③ 윤리의식 확립
- ④ 국민참여 확대
- ⑤ 교육홍보강화
- ⑥ 기타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5] 조사 결과

### 1. 허가과정

〈부표 5-1〉 허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여부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73	100.0	119	100.0
제한적 있음	52	71.2	59	49.6
그런 적이 없음	21	28.8	60	50.4

주: 무응답을 제외함.

〈부표 5-2〉 허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한적 있음	52	100.0	59	100.0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26	50.0	51	86.4
조속한 허가를 얻기 위해	11	21.2	5	8.5
허가과정의 관례상	10	19.2	1	1.7
기 타	5	9.6	2	3.4

〈부표 5-3〉 허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공무원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90	100.0	41	100.0
경찰공무원	39	43.3	7	17.1
구청공무원	35	38.9	31	52.5
소방공무원	12	13.3	2	3.4
세무공무원	3	3.3	1	1.7
검찰청공무원	1	1.1	-	-

주: 해당 대상자만 중복응답함.

## 2. 영업과정

〈부표 5-4〉 영업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가장 주요한 형태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66	100.0	54	100.0
단속시 처벌 완화를 목적으로한 상납	41	62.1	40	74.1
업주 스스로의 상납	16	24.2	5	9.3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	3	4.5	6	11.1
기 타	6	9.1	3	5.6

주: 무응답을 제외한 수입.

〈부표 5-5〉 영업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여부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94	100.0	106	100.0
제공한 공무원 있음	70	<b>74.5</b>	52	49.1
그런 적이 없음	24	25.5	54	<b>50.9</b>

주: 무응답을 제외한 수입.

〈부표 5-6〉 영업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공무원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70	100.0	52	100.0
경찰공무원	43	<b>61.4</b>	34	<b>65.4</b>
구청공무원	20	28.6	5	9.6
소방공무원	4	5.7	3	5.8
세무공무원	2	2.9	7	13.5
검찰공무원	1	1.4	2	3.8

주: 1) 무응답을 제외한 하였음.

2) 금품제공 횟수가 가장 많았던 공무원에 대해 두가지를 선택하도록 함.

〈부표 5-7〉 업주 스스로의 상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내 용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55	100.0	96	100.0
수시·상시 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21	<b>38.2</b>	18	18.8
공무원의 자의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17	30.9	48	<b>50.0</b>
수시·상시 점검의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8	14.5	6	6.3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6	10.9	16	16.7
기타	3	5.5	8	8.3

주: 무응답을 제외한 수임.

〈부표 5-8〉 업주 스스로 상납을 했을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 여부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136	100.0	98	100.0
그런 적이 있음	108	<b>79.4</b>	55	<b>56.1</b>
그런 적이 없음	28	20.6	43	43.9

주: 무응답을 제외함.

〈부표 5-9〉 업주 스스로 상납을 했을 경우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공무원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108	100.0	55	100.0
경찰공무원	58	<b>53.7</b>	5	9.1
구청공무원	21	19.4	39	<b>70.9</b>
소방공무원	4	3.7	1	1.8
세무공무원	2	1.9	4	7.3
검찰청공무원	2	1.9	2	3.6
기타	5	4.6	4	7.3

주: 무응답을 제외함(단, 1999년 중복응답).

〈부표 5-10〉 단속시 처벌완화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공무원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22	100.0	166	100.0
경찰공무원	16	72.7	61	36.7
구청공무원	5	22.7	56	33.7
소방공무원	-	-	5	3.0
세무공무원	-	-	41	24.7
검찰청공무원	-	-	3	1.8
기타	1	4.5	-	-

주: 무응답을 제외함(2003년은 중복응답임).

〈부표 5-11〉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 여부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70	100.0		100.0
그런적이 있음	56	80.0		
그런적이 없음	14	20.0		

주: 1) ( )안의 숫자는 무응답을 포함한 수임. 비율은 무응답을 제외한 기준임.

〈부표 5-12〉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이 있었던 경우

(단위: 명, %)

내 용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56	100.0	96	100
명절 때 (떡값 명목)	26	46.4	26	27.1
휴가철(휴가비 명목)	15	26.8	8	6.5
업무인수 인계시	10	17.9	53	43.1
경조사비	2	3.6	1	0.8
기 타	3	5.4	8	6.5

주: 무응답을 제외한 수임.

〈부표 5-13〉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시 금품 및 향응 제공 여부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111	100.0	156	100.0
그런 적이 있음	77	69.4	123	78.8
그런 적이 없음	34	30.6	33	21.2

주: 무응답을 제외함(중복응답임).

〈부표 5-14〉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상납시 금품 및 향응 제공 대상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77	100.0	123	100.0
경찰공무원	47	61.0	57	46.3
구청공무원	23	29.9	49	39.8
검찰청공무원	3	3.9	2	1.6
소방공무원	2	2.6	4	3.3
세무공무원	1	1.3	42	34.1
기타	1	1.3	2	1.6

주: 무응답을 제외함(2003년 중복응답임).

〈부표 5-15〉 금품을 상납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69	100.0	116	100.0
있음	43	62.3	81	69.8
없음	26	37.7	35	30.2

주: 무응답을 제외한 수임.

〈부표 5-16〉 금품상납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경우 해결방안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42	100.0	76	100.0
불이익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 상납을 하였음	28	66.7	69	90.8
가만히 있었음	12	28.6	5	6.6
다른 행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음	2	4.8	2	2.6

주: 불이익을 당한 대상자 중 무응답자 제외함.

〈부표 5-17〉 금품 상납 여부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45	100.0	98	100.0
그런 적이 있음	33	73.3	50	51.0
그런 적이 없음	12	26.7	48	49.0

주: ( )안의 숫자는 무응답을 포함한 수임. 비율계산에서는 무응답을 제외함.

〈부표 5-18〉 연간 금품 상납액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33	100.0	50	100.0
200만원 미만	23	69.7	20	4.0
200~400만원 미만	6	18.2	8	16.0
400~600만원 미만	2	6.1	1	2.0
600~800만원 미만	-	-	-	-
800~1000만원 미만	1	3.0	3	6.0
1000만원 이상	1	3.0	18	36.0

주: 무응답을 제외함.

〈부표 5-19〉 단속을 가장 불합리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공무원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71	100.0	118	100.0
경찰공무원	57	<b>80.3</b>	85	<b>72.0</b>
구청공무원	3	4.2	4	3.4
소방공무원	3	4.2	1	0.8
지방검찰청	2	2.8	2	1.6
세무공무원	-	-	3	2.4
생각해 본적 없음	6	8.5	23	18.7

주: 무응답을 제외함.

〈부표 5-20〉 업소운영관련 공무원의 월평균 지도점검 및 단속횟수

(단위: 명,%)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45	100.0	-	-
1~5회	29	64.4	-	-
6~10회	7	15.6	-	-
11~15회	6	13.3	-	-
16회 이상	3	6.7	-	-

주: 무응답을 제외함(2003년은 조사항목 제외됨).

〈부표 5-21〉 단속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

(단위: 명, %)

내 용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74	100.0	116	100.0
특정한 시기가 없음	56	75.7	24	20.7
연말 연시	16	21.6	87	75.0
휴가철	1	1.4	2	1.7
기 타 <sup>1)</sup>	1	1.4	3	2.6

주: 무응답을 제외함.

기타: '인사이동시'

〈부표 5-22〉 단속정보 입수경로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67	100.0	108	100.0
타업소와의 연락을 통해	46	68.7	91	84.3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6	9.5	4	3.7
공문이나 공무원의 공식적인 전화통보를 통해	5	7.5	6	5.6
법규정을 통해	1	1.5	3	2.8
기 타 <sup>1)</sup>	9	13.4	4	3.7

주: 무응답을 제외함.

기타: '협회를 통해', '불법업소 및 타업소 간판의 소등여부로 판단(무허가 영업소 등 협회회원이 아닌 업소가 공무원들을 통해 정보를 얻어냄)'

〈부표 5-23〉 현행 영업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위반 여부

(단위: 명)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125	100.0	227	100.0
위반한적 있음	124	99.2	218	96.0
위반한적 없음	1	0.8	9	4.0

주: 무응답은 제외하며, 무적발 건수도 포함.

〈부표 5-24〉 현행 영업규정과 관련하여 위반하고 있는 영업행위

(단위: 명)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124	100.0	218	100.0
여성종사자 불법영업	56	44.8	90	41.3
영업시간 위반 <sup>1)</sup>	32	25.6	-	-
내부시설관련	18	14.4	34	15.6
보건증 보유여부(건강진단여부)	9	7.2	39	17.9
허가증 미부착	4	3.2	39	17.9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3	2.4	3	1.4
미성년자 고용	1	0.8	2	0.9
건축법, 학교보건법 위반	1	0.8	4	1.8
허가구역 위반	-	-	4	1.8
기타	-	-	3	1.4

주: 1) 무응답을 제외함.

2) 영업시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999년 3월 1일 이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에 대해서도 모두 영업시간 규제가 철폐되었으므로 2003년 이후 불법의 소지는 해소되었으며, 2003년은 보건증 위반대신 건강진단 여부를 질문함.

3)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부표 5-25〉 불법영업임에도 모면할 수 있었던 방법

(단위: 명, %)

구 분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48	100.0	168	100.0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로	19	39.6	70	41.7
정기적 상납이나 수시 상납에 따른 대가	16	33.3	4	2.4
미리 준비해 둔 금품 제공	6	12.5	76	45.2
술접대 및 향응제공	2	4.2	8	4.8
기 타	5	10.4	10	6.0

주: 무응답을 제외함(2003년 중복응답임)

기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무마를 시도함'.

〈부표 5-26〉 현행 공무원 단속실태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행위

(단위: 명, %)

내 용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66	100.0	106	100.0
법규의 모순 내지 미비로부터 오는 문제	25	37.9	7	6.6
중복단속에서 오는 간접적 영업방해	19	28.8	81	76.4
단속공무원의 비전문성에서 오는 문제	17	25.8	8	7.5
영업방해식 단속	5	7.6	8	7.5
기타	-	-	2	2.0



### 3. 2003년 신규 조사 결과

〈부표 5-27〉 공무원 비리의 해결방안

(단위: 명, %)

내 용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	-	110	100.0
시민단체에 의한 단속	-	-	94	85.5
정당한 단속여부 확인가능한 단속증 보유	-	-	5	4.5
단속공무원의 업소출입에 대한 사전예고제 시행	-	-	4	3.6
단속기관과 목적을 정하여 단속	-	-	2	1.8
타업소의 직원과 동행하여 단속	-	-	-	-
기타	-	-	5	4.5

주: 무응답을 제외함.

〈부표 5-28〉 식품위생공무원의 부패수준

(단위: 명, %)

내 용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	-	113	100.0
매우 부패한 편임	-	-	14	12.4
부패한 편임	-	-	78	69.0
보통임	-	-	15	13.3
부패하지 않은 편임	-	-	5	4.4
전혀 부패하지 않은 편임	-	-	1	0.9

주: 무응답을 제외함(부패한 편임: 81.4%, 부패하지 않은 편임: 5.3%).

〈부표 5-29〉 식품위생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비리 인지시 신고 여부

(단위: 명, %)

내 용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	-	118	100.0
반드시 신고함	-	-	9	7.6
경우에 따라 신고함	-	-	8	6.8
신고 안함	-	-	101	85.6

주: 무응답을 제외함.

〈부표 5-30〉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우선과제

(단위: 명, %)

내 용	1999		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계	-	-	113	100.0
제도개선	-	-	108	<b>95.6</b>
적발 및 처벌강화	-	-	-	-
국민참여 확대	-	-	2	1.8
교육홍보 강화	-	-	2	1.8
윤리의식 강화	-	-	1	0.9
기타	-	-	-	-

주: 무응답을 제외함.



CORRUPTION ZERO

# 부패방지위원회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www.kicac.go.kr](http://www.kicac.go.kr)